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사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력의 한 결과로 제정된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이후
관련 법제도 및 사회적 지원체계 등에 대한
담론과 법 개정 등 후속 논의를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왔습니다.
또한, 주효한 가정폭력 대응책 중 하나로 가정폭력상담 현장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해왔습니다.
피해자 상담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보호·지원하며,
가해자 상담은 가해자에게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과 동시에
성행교정을 통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변화가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 상담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기념하여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사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6.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목 차

| 주제발표 |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	7
-----------------------------	---

이 서 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 토론발표 |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45
---------------------------------------	----

김 진 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51
-------------------------------------	----

양 혜 원 충신대학교 교수

가정폭력상담소의 활동성과 및 과제	57
--------------------------	----

유 향 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67
-------------------------------------	----

조 성 균 여성가족부 권익보호 과장

| 조사연구 결과 |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연구 결과	69
--------------------------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

이 서 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가정사이며 개인의 행위로 여겨져 왔다. 199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가정폭력은 사회사이며 국가가 개입해야 할 범죄행위로 변화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 중 아내에 대한 폭력에 의하여 2008년 기준으로 1년에 약 2조 821억원의 사회적 비용¹⁾이 발생하고 있어 가정폭력 근절은 사회가 부담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2018년 6월 현재에도 가정폭력이라는 범죄행위를 줄이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한 지금 그간 사회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과가 이루어진 부분을 더욱 보강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

1)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추산되었다. 직접 비용은 사법체계, 의료비용, 사회서비스, 가사법률로 구성되어 총 683,439백만원, 간접 비용은 취업/가사중단 경제적 손실, 인간적·정서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총 1,398,699백 만원으로 추계되었다(문유경,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완한다면 가정폭력이 우리 가정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을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에도 폭력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족 내 개인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가정 폭력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할 대표적 행위이다.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법의 근본적 의의는 가정폭력이 가정 내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되었다는 데 있다. 가정폭력특별법 등장 이후 가정폭력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공적인 범죄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처벌 및 보호가 명시된 것이 가정폭력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특별법은 가해자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으로 이분화되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1997년 12월 31일 제정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후 2018년 6월 현재 만 20년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년간 가정폭력은 감소하였는가 아니면 증가하였는가. 만약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검토사항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민간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얼마나 진전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두 번째 검토 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에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실태를 통해 20년간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와 사법체계, 민간을 대표하는 상담현장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1. 가정폭력 실태로 본 성과와 과제

1) 성과 : ‘가정폭력이 줄었다’

가정폭력은 지난 20년간 증가하였는가. 변함이 없는가. 감소하였는가.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2004년부터 여성가족부는 3년을 단위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가정폭력실태

조사를 2016년까지 3년 단위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의 경향을 보면 2019년 우리나라 가정폭력은 현재보다 더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은 2004년 15.7%, 2007년 11.6%, 2010년 16.7%, 2013년 7.2%, 2016년 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국 단위로 가정폭력 실태조사(김재엽)를 실시한 2000년만 해도 신체적 폭력률은 34.0%로 세 가구 당 한 가구 꼴로 부부사이에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세 집 건너 한 집에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수치로 우리 사회가 그간 폭력이 일상화된 가족 속에서 부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초기에 밝혀진 가정폭력의 실상은 충격적인 수치였다. 이에 국가와 민간 단위에서는 일상화되고 만연화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부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사법시스템이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행위자 성행교정 및 피해자 안전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가정폭력단체들의 연합회가 결성되고,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 심리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한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의 개소와 꾸준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여성 지원 시설이 증가하였고 지원시스템도 정비되기 시작했다.

국가의 노력이 가장 눈에 띄게 가시화된 것은 2013년 출범한 정부의 4대악 근절 정책이었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중 첫 번째 악이 가정폭력이었다. 이는 이전까지 가정폭력 대응에 미온적인 경찰의 태도를 20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사법처리 속도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경찰과 검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 검거 및 처벌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 되었다. 정부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제도도 속속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국민 감수성이 큰 폭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은 이전 사회에서 가지기 어려운 인식이었다. 가정사로 여겼던 가정폭력이 국가에 의해 근절해야할 첫 번째 악이자 범죄로 규정되자 국민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이는 가정폭력률이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로 감소한 것과 가정폭력 신고의 급증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는 새정권으로 바뀐 2018년 현재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극적인 감소는 정부가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할 경우 가정폭력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가정폭력 실태로 살펴본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34%에서 3.7%로 가정폭력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민과 관이 한 목소리를 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과제 : ‘정말 가정폭력이 줄었을까?’

2016년 기준 부부간 가정폭력률은 3.7%로 16년 전인 2000년 34.0%에 비해 무려 10배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감소는 큰 폭의 변화다. 이는 가시적이고 양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신체적 폭력이 크게 감소하고 근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비가시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정말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이 근절되어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이 향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아래 [표 1]에서 향후 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표 1] 2013, 2016년 부부 신체적 폭력률 변화²⁾

폭력유형	연도	전체	남편			아내		
			가해	피해	상호폭력	가해	피해	상호폭력
신체적 폭력	2013	7.2	6.4	2.8	1.8	3.4	4.9	1.3
	2016	3.7	2.1	1.6	0.6	1.9	3.3	0.9
정서적 폭력	2013	36.1	33.3	26.7	22.9	29.6	28.6	23.1
	2016	12.5	10.5	7.7	5.9	8.4	10.5	6.2
경제적 폭력	2013	5.0	4.0	2.1	0.7	2.1	3.5	1.0
	2016	2.5	1.5	0.8	0.4	1.1	2.4	0.3
성적 폭력	2013	4.9	4.4	0.9	0.3	1.1	4.3	0.5
	2016	2.2	1.8	0.3	0.1	0.3	2.3	0.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과 비교할 때 2016년에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의 모든 폭력유형에서 절반 이하로 폭력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폭력유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정서적 폭력률이다. 다른 폭력유형이 한 자리 수인데 정서적 폭력만 두 자리 수로 2013년에는 무려 36.1%, 절반 이하로 감소한 2016년에도 12.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향후 가정폭력 치료 상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 정서적 폭력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실제로 상담소에서 만나는 행위자들의 2013년 이후 가장 큰 변화도 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경제적 폭력의 등장이었다. 물건이나 손, 주먹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전통적인 폭력이 범죄시되면서 또 다른 폭력의 유형으로 아내에게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일체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일선현장에서 상담실무자들이 체감하는 가정폭력 유형의 새로운 변화였다. 최근에 와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폭력의 유형은 통제다.

2) 여성가족부, 『2016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2017

배우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통제행위가 그것이다. 범망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가정폭력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를 반영하여 여성가족부의 2016년 실태조사에서는 통제가 새로운 가정폭력 유형으로 추가되어 조사 되었다.

[표 2] 2016년 새로운 부부폭력 유형으로서 통제³⁾

통제	전체	남편			아내		
		가해	피해	상호폭력	가해	피해	상호폭력
2016	37.7	31.8	30.4	23.5	29.8	29.7	22.8
내용	1.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2. 친정(본가)식구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3. 항상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4.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5.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6.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7. 병원에 가야할 때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라 하면 가장 먼저 흥기를 난폭하게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사정없이 구타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는 가정폭력의 밖이 드러난 행위일 뿐 가정폭력의 본질이라 볼 수 없다. 가정폭력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지배와 통제행위이다. 신체적 폭력은 배우자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통제는 가정폭력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행동이 37.7%에 달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감소하거나 근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배와 통제가 아닌 조화와 평화가 비폭력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에

3) 여성가족부, 『2016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2017

대한 시선은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심리적 폭력으로 전환할 시기에 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바라본 2018년 한국의 가정폭력 상황은 새로운 전환기에 있다. 과거 흥기나 주먹으로 배우자를 구타하던 눈에 띄는 가시적인 신체적 폭력은 점차 근절되어 가는 반면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제재, 통제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비가시적인 폭력이 핵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가 이와 같다면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국가와 민간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정책 및 치료 상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른 접근방법을 추구하는 동향은 우리 사회가 주목해보아야 할 중요한 흐름이다. 2000년대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서는 가정폭력의 본질을 ‘폭력’이나 ‘피해’가 아닌 ‘강압적 통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가정폭력의 개념을 재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폭력행위’가 아닌 ‘통제’를 가정폭력의 핵심개념으로 정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폭력 하면 떠올리던 신체적 폭력은 사법체계가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음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경찰이나 검찰은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에 개입한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은 심리적인 가정폭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 이르러서야 개입한다면 이미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오래도록 노출되어 심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특성을 이론으로 개념화한 것이 Evan Stark의 강압적 통제론(theory of coercive control)이다⁴⁾. 강압적 통제론의 문제의식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체적 폭력보다도 그에 전후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강압과 통제의 패턴이 가정폭력 범죄의 가장 끔찍한 부분이라고 호소한 것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체적 폭력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폭력이 더욱 폭력적이고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Stark는 가정폭력의 핵심을 ‘통제’라고 재개념화하

4) 민윤영,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 및 범죄화에 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보고서, 2016

고,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재정의한다. Stark의 강압적 통제론은 2007년 그의 책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가 출간된 이후 서구의 가정폭력 담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은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영미권의 가정폭력의 정의는 강압적 통제론을 수용하여 변화되었다. 이러한 Stark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정책에 도입한 나라가 영국이었다. 영국은 2015년 England와 Wales의 법으로 Serious Crime Act 2015를 개정하면서 Part 5에 Section 76을 신설하였다⁵⁾. 이 조항은 가족구성원(또는 가족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 사이에 발생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가 지속 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패턴화된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가정폭력 행위의 유형을 범죄로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영국은 이미 이 법을 근거로 몇 건의 형사처벌이 있었다⁶⁾. 이를 통해 영국은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형사적 처벌이 단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을 통제를 중심으로 정의한다. 미국 법무부의 정의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부부 또는 친밀한 관계의 두 사람(intimate partners) 중 한 사람이 “권력과 통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학대적 행위의 패턴”으로서, 신체적, 성적, 감정적, 경제적, 심리적 행위가 포함되며,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적인 행위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겁주기, 심리조작, 모멸감 주기, 고립, 공포감 야기하기, 비난하기, 상처주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기 등이 포함된다. 즉 우리 법처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통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위들의 패턴’에 주목하는 것으로, 비난하거나 모멸감 주기 등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유의미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

5) Serious Crime Act 2015의 Part 5 Section 76은 경찰과 기타 법집행 기관들이 심각하며 조직적인 폭력 범죄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총 여섯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6) 2016년 7월까지 SCA 2015 section 76으로 4명이 처벌되었다는 기사로는 <http://well.blogs.nytimes.com/2016/07/11/with-coercive-control-the-abuse-is-psychological> 참조

해자가 통제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행위들을 가정폭력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폭력의 개념을 강압적 통제로서 재정의 할 때, 비로소 가시적인 폭력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누적되었을 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 폭력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들이 생길 수 있으며 신체적 폭력의 의미 역시 맥락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에 있어서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후에는 기존의 형법으로 취급될 수 없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들의 경우 어떠한 법적 개입이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성과와 과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선에 서 있는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20년 동안 쉼 없이 지속하고 있는 핵심 주체이다.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볼 때 여성가족부의 노력은 크게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성행교정을 위한 치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주거, 법률, 보호에 이르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해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상담하고 있는 일선 상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역량 강화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성과라는 측면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제도와 피해자 보호제도로 나누어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위자 치료

(1) 성과 : ‘행위자 성행이 교정되고 있다’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제도는 크게 상담위탁과 수강명령으로 나

누어진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에서 관여하는 제도는 상담위탁이다. 상담위탁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법정에 선 행위자에게 법원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일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선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위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부캠프, 알코올상담, 집단교육 등의 폭력성행교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일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시행하는 행위자 상담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수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현재 208개 일선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위탁 서비스를 양질로 제공하려는 동기가 생기고, 현재까지 각 상담소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 표준 상담치료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해왔다. 특히 2015년에 이르러서는 여성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가 수집되고 이에 기반하여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왔으나 여성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어 남성들을 위해 제작된 행위자 프로그램을 여성들에게 그대로 사용해왔다. 여성들은 남성 행위자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함께 남성 행위자와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에게 적합한 특화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게 된 것이다. 이제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개발 보급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2) 과제 : ‘행위자 매뉴얼을 따라가도 되는가?’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일선 기관 지원 및 평가 그리고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의 노력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향후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평가와 관련한 과제로는 현재의 평가 척도가 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효

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실제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변화하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실무자와 행위자가 체감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평가 기준으로는 이를 제대로 측정하거나 반영할 방법이 없다. 이는 평가척도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고민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과거 특정 지역에서는 여성가족부 평가를 앞두고 유사한 평가항목으로 사전점검을 하여 평가점수를 높일 준비를 시킨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평가항목에 실제적인 행위자의 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과제라 하겠다.

두 번째 과제는 표준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표준 매뉴얼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매뉴얼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정부 매뉴얼대로 행위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 매뉴얼이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소수 현장 실무자들에게 자문회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매뉴얼을 개발하는 연구팀이 반영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고 그나마 일회성이라 실제 자문회의 내용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후 현장밀착형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 2년 이상 긴 개발기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개발자를 학자에서 현장 실무자로 전환하며 학자는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이 단기간에 학자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효성이 적은 자문으로 경청하는 구도에서는 현장외면형 매뉴얼이 될 수밖에 없다.

2) 피해자 보호

(1) 성과 : ‘피해자는 도움을 받고 있다’

20년 동안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개입 및 치료는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소폭 개선된 데 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시스템은 보다 정교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진전의 가장 큰 주체는 여성가족부였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일선 관련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

다. 가장 긴급한 위기개입에서부터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상담지원을 살펴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 지원으로 365일 24시간 전화, 면접, 사이버, 카카오톡 상담을 통한 위기 개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및 동반자녀를 대상으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여 7일 이내 긴급보호를 하고 있다. 이후 쉼터, 법률,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지원은 피해자 의료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치료 보호 비용 및 무료진료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해주고 있다. 임신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해 의료비 지원한다. 이 때 소요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거지원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동시에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동반자녀에 대해 학업, 심리치유, 취학 및 비밀전학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쉼터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쉼터 퇴소 후에도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이 최대 4년, 2년간 거주 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공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과금만 입주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송 대리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 안전과 신변 보호가 최우선인 점에서 피해자 신변 보호제도가 강화되었는데 피해자의 주소지가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특정 대상자에 한해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고 있다. 즉 피해자 거주지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위자와 직계가족과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열람 및 교부 제한대상자가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생겨 주민등록 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

능해졌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례집에 수록된 아래 사례는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시스템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모를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큰 폭력이 되 돌아왔고, 그 고통의 시간들은 저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지구대와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로 위급상황 모면

남편의 폭력이 있던 어느 날 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지구대에 다시 한 번 연락을 했죠. 다행스럽게도 지난 번 방문 때 남편을 수상쩍게 생각했던 지구대원이 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저를 기억했더라고요. 지구대원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까지 대기시켜 놓고 저와 아이를 집에서 꺼내주었죠. 그렇게 저는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준 쉼터에서의 시간들

지구대와 경찰은 저희를 1366 긴급 피난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간 마음의 안정을 취한 뒤, 아이와 저는 쉼터로 이동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온 제게, 마음 편하게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서히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얼른 나가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쉼터는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불만이 생기다 보니 쉼터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얼른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늘 가득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소장님이 아이에게 관여하는 것이 보기 싫어 다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쉼터의 소장님은 제 마음을 다독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쉼터에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자 쉼터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시작했고 조금씩 아이의 양육비를 벌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하면서 당시 제 마음 속에는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랬듯 변하지 않는 마음은 없고 쉼터에서의 관심과 지원도 결국은 그 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했어요. 쉼터의 지원이 끊어지기 전에 얼른 내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만약 제가 그 때 사회로 곧바로 나가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면 아마 저는 또 다시 상처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나중에야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그 때 저 역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니까. 상처로 얼룩져 사람들에게 늘 날이 서 있었고 우울증과 감정기복도 굉장히 심했어요. 일보다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내 자신을 알게 해 준 ‘독서치료’와 ‘비폭력 대화’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 하나가, 혼자서 견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 지인들에게 숨기기 바빴고 당시 재혼이었기 때문에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죠.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런데 쉼터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살 부대끼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많은 안정과 위안을 얻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이 독서 치료와 비폭력 대화예요. 독서치료는 시를 낭독하면서 내면의 모습과 성격을 들여다보는 건데, 그 시간을 통해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 동안 남편에게 당하기만 하는 제 자신이 밉고 용서가 안 됐는데 그런 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고 저는 폭력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저 역시 주변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순간 보니 제 화를 아이에게 다 풀고 있더라고요. 아이와 의사소통하는 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쉼터에서 ‘비폭력 대화’ 강의를 듣게 되면서, 아이에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사과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곧바로 사과를 하고, 칭찬할 일이 있을 때는 칭찬을 하고. 덕분에 요즘은 아이와의 대화도 많아지고 주변에서도 많이 밝아졌다고 해요.

주거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자립의 기회

쉼터에서는 자립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점점 크다 보니 저도 쉼터에만 계속 있을 수 없고 독립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쉼터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거지원을 신청해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한 가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와 저의 보금자리가 생겼으니, 이제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 꿈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려고요. 이런 즐거운 상상들을 할 수 있게 된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 과제 : ‘더 많은 피해자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조사한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이 필요한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라 응답하였다. 이러한 욕구에 근거하여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경제적 의존이 가정폭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곧 가정폭력 근절과 맞닿아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67개소가 운영 중이고 실제 피해 여성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립의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고, 다시 폭력적 관계로 되돌아가기도 하는데, 폭력피해를 예상하면서도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곤란과 주거마련의 어려움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들이 폭력을 피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해 왔고, 2014년부터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점점 보편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사후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자립정책이자 폭력피해 재발을 막는 예방정책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을 생계비 지원이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고용 안정 및 유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 결근하게 되거나, 업무수행에서 차질을 보이거나, 행위자가 직장까지 찾아와 피해자 및 그 동료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일로 인해 스스로 퇴직하거나, 그것이 빌미가 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고용안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입법례의 경우, 고용안정법은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고의 염려 없이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가 직장에서 어떻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먼저 미국은 2017년 10월 31일 발의된 연방법 및 2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휴가법, 그 외 범죄피해자 고용보호법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해고의 우려와 직장 내 차별 없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범죄피해의 회복과 안전도모를 위한 휴가사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캐나다의 매니토바 주는 지난 2016년 법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 휴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온타리오 주는 근로자와 그 자녀가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그 위협에 직면했을 때 실직에 대한 우려 없이 17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호주의 퀸즐랜드 주정부는 2017년 가정폭력 휴가제 도입으로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에게 유/무급의 휴가를 보장하여 가정폭력 피해 회복과 안전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취업지원 정책은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 피해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업훈련의 기회 및 취업연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10세 이상의 남아가 있을 경우 자녀 동반 불가 등의 문제로 쉼터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이 극소수에 해당하므로 시설위주의 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사법체계의 성과와 과제

1) 경찰의 성과와 과제 : ‘힘과 전문성을 모두 가지게 될 것인가?’

경찰은 가정폭력 사법체계의 제일선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가정폭력피해자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과 개선요구를 받아오고 있다.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출동하고도 돌아가는 미온적 대처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초동대처와 사건 처리로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찰의 성과를 요약하자면 권한은 적지만 전문성을 갖추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전문화를 위해 노력한 경찰의 첫 번째 성과라 할 수 있다. 2013년 범정부차원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되면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표 3] 가정폭력 사건 발생 건수 및 검거 현황⁷⁾

연도	발생건수	검거인원	재범인원	재범률
2013	16,785	18,000	2,131	11.8
2014	17,557	18,666	2,072	11.9
2015	40,828	47,543	2,336	4.9
2016	45,619	53,511	2,023	3.8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이전 해보다 두 배 이상 건수를 보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국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 요인 및 경찰의 출동시 조치에 대한 신뢰 향상 요인이 동시에

7) 경찰청, 『경찰통계』, 2017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은 2014년 3월 2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을 선발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1급지 경찰서를 중심으로 이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2015년 2월에는 여성·청소년수사과라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였다. 여성·청소년 수사과는 가정폭력과 함께 성폭력, 학교폭력, 소년사건, 실종 아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청소년수사과에는 학대 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 APO)⁸⁾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APO는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에 대한 ‘예방-수사연계-사후관리’ 등을 총괄하여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체계의 일환으로 구축하였다. 여성·청소년수사과의 현원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기준 총 3,049명이다. 이들은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최대 7일까지의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1366센터와 연계해 최대 2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거지를 원할 경우, 입주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도 있다.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의료지원을,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긴급지원도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경찰관이 직접 상담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민사·가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아동이 있을 경우 재입학 등 취학지원을 해주고,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간다면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주민등록 열람 제한도 가능하다.

한편 경찰의 과제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초기에 적절하지 못한 대응의 극복을 들 수 있다. 경찰의 초기 대응과정에서의 소극적 자세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가정폭력 사법절차의 만성적인 문제였다. 경찰의 초기 대응은 이후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행위자 모두에게 형사법적 개입에 대한 첫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향후 법적 개입의 실효성을 좌우하기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찰의 적절한 초기 대응만으로도 행위자에게 강한 심리적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어설픈 개입은 오히려 행위자를 자극하여 더 큰 폭력행사의 구실이 될 수 있다. 공권력 개입이 늦거나, 개입정도가 가벼우면 피해자

8) 2016년 ‘학대전담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 APO)’으로 발대하였다. 2017년 경찰용어 순화를 위하여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경찰청, 2017).

최후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고,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폭력을 강화하게 된다.

초기 대응단계에서 소극적 자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힘과 전문성이라는 두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 즉 힘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힘은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해 안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나간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폭력행위 제지 및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 의료기관에 피해자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출동해도 행위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2017년 남인순의원, 2018년 이찬열의원에 의해 초기 응급조치 단계에서부터 현행범인 행위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포우선제도를 도입하는 입법발의를 한 상태이다. 이는 경찰에게 초동 출동단계에서 현재보다 막강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경찰은 전문적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 현재 전문화를 추구하며 구축한 가정폭력전담관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성 구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먼저 APO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치되어 관서별로 1명의 APO가 담당하는 재발우려가정이 2개 에서 56개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다. 그러므로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배치되어 가정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APO는 관서별로 재발우려 가정의 수를 고려하여 재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을 규정하는 매뉴얼은 관련 법규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가정폭력 사건 관련 매뉴얼은 가해자 와 피해자의 국적·장애 등의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신고접수→ 현장 도착→ 현장 떠나기 전→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청의 교육이 가정폭력 전담수사체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체

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 소속 경찰관 대상 교육이 정례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인식의 편차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경찰청이 실시하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항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가정폭력 전담수사체계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검찰의 성과와 과제 : ‘더 정교해질 수 있을까?’

검찰은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주체이다. 경찰에서 송치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기소할 것인지 여부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기소와 불기소 및 가정보호사건 송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표 4] 검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분 현황⁹⁾

연도	총합계	기소	가정보호사건송치	불기소
1998	1,455	31.8	34.0	29.3
1999	9,210	22.1	36.7	39.3
2000	13,325	18.8	36.7	43.4
2001	17,281	20.3	37.2	41.5
2002	15,347	17.5	32.6	48.6
2003	19,004	14.8	31.1	53.3
2004	17,373	14.0	30.0	55.0
2005	15,545	13.9	28.8	56.7
2006	13,576	14.5	30.9	53.9

9)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

2007	12,782	13.7	37.0	48.8
2008	13,344	13.8	36.2	49.1
2009	12,132	10.4	37.7	51.2
2010	5,185	11.1	36.8	52.4
2011	6,227	17.7	17.7	64.1
2016	53,267	8.5	38.2	51.2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현행법에서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검찰에 요구되고 있는 과제는 검찰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어온 문제점은 왜 이렇게 불기소율이 높은가였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송치하는 것 모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불기소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가정폭력의 방치 및 재발의 위험이 상존하게 되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2016년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가운데 51.2%가 불기소였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율은 38.2%, 기소율은 8.5%에 그쳤다. 2011년의 경우에는 불기소율이 64.1%에 이르렀다. 이는 검찰단계에서 가정폭력사건의 절반 이상이 더 이상 문제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명 중 5명이 문제없음으로, 3명이 가정보호사건으로, 2명만이 문제 있음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20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분에서 검사의 사건처리 재량이 매우 크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및 선별검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가정보호사건 처리 예외 사유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반영이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정전조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정전조사에서 당해 사건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닌 과거의 가정폭력에 대한 평가

및 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부 가정폭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검찰단계에서 결정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신이 처벌받지 않게 도와주면 폭력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협하는 등의 강박 때문에 처벌에 대한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은 피해자 처벌 의사 철회 시, 피해자 의사에 대한 재조사 명령을 통해 장기간 진행된 수사 및 심리 과정 상 피해자의 안전 상태 변화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피해자가 전문상담기관을 이용했는지 확인하고 이용했다면 상담기관의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검찰의 보다 정교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및 행위자 모두에게 적절한 형사법적 대응이 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원의 성과와 과제 : ‘더 세심해질 수 있을까?’

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는 법원이다. 법원의 판결은 가정폭력 사건의 최종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후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표 5]에는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5]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분별 현황¹⁰⁾

연도	총합계	보호처분	불처분	기타
1998	235	178 (75.7)	55 (23.4)	2 (0.8)
1999	2,552	1,448 (56.7)	1,071 (42.0)	33 (1.3)
2000	4,619	2,695 (58.3)	1,794 (38.8)	130 (2.8)

10) 대법원, 『사법연감』, 1999~2017

2001	5,602	2,725 (48.6)	2,371 (42.3)	506 (9.0)
2002	6,203	2,647 (42.7)	3,257 (52.3)	299 (4.8)
2003	5,551	2,576 (46.4)	2,371 (42.7)	604 (10.9)
2004	5,852	2,732 (46.7)	2,498 (42.7)	622 (10.6)
2005	4,405	2,577 (58.5)	1,332 (30.2)	496 (11.3)
2006	4,792	3,005 (62.7)	1,522 (31.8)	265 (5.5)
2007	4,550	2,839 (62.4)	1,387 (30.5)	324 (7.1)
2008	5,132	3,132 (61.0)	1,758 (34.3)	242 (4.7)
2009	4,822	2,996 (62.1)	1,556 (32.3)	270 (5.6)
2010	3,812	2,368 (62.1)	1,275 (33.5)	169 (4.4)
2011	2,971	1,855 (62.4)	974 (32.8)	142 (4.8)
2012	3,626	2,253 (62.1)	1,206 (33.3)	167 (4.6)
2013	5,699	3,749 (65.8)	1,772 (31.1)	178 (3.1)
2014	8,586	5,552 (64.7)	2,856 (33.3)	178 (2.1)
2015	16,868	8,917 (52.9)	7,319 (43.4)	632 (3.7)
2016	21,802	11,368 (52.1)	9,792 (44.9)	642 (2.9)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과 유사하게 법원에서 가정폭력 사건 판결 결과를 보면 2명 가운데 1명이 불처분되는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향후 판결 전 보다 세밀하게 가정폭력의 전력과 위험성 등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보호처분의 내용으로는 1호-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제한, 3호-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7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호-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보호처분 내용과 관련

해서는 20년 동안 가정법원에서는 점차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상담을 통한 치료·교정 방안을 선호하게 되어 보호처분 중에서는 상담위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그 결과 상담현장에 과거보다 많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상담위탁을 받고 참여하고 있어 상담을 통한 성행교정 및 폭력재발 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담현장에서 체감되는 법원의 변화는 부부를 함께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과 가정폭력 발생 이후 상담에 참여하는 시기가 빨라진 것을 들 수 있다. 법률이 시행되던 초기에 상담위탁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폭력 발생 시점과 상담소에 상담 받으러 오는 시점의 간격이 매우 큰 것이었다. 심한 경우 1년이나 2년이 지난 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저항과 반발이 심했다. 다 지난 일인데 이제 와 상담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항의가 많았다. 20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항의는 거의 사라졌다. 사건 발생 이후 상담소에 오기까지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 검찰, 법원의 협력시스템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신고 → 사법경찰관의 사건에 대한 검찰청 송치 → 검사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 법원의 보호처분으로서 상담위탁 → 상담개시까지 통상 3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내리는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가정폭력 행위자가 폭력을 행사한 후 법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평균 4.6개월, 2002년에 8.4개월, 2003년에 5.6개월, 2006년에 8.4개월, 2007년 이후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다가 2011년에는 3.8개월로 단축되었으며¹¹⁾ 현재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 15일 이내에 법원 명령을 받은 후 상담소에 오게 된다는 사실을 참고할 때 향후 현재의 속도는 조금 더 단축된다면 사법시스템과 상담시스템이 조화로운 관계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법원의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시간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오랫동안 행위자들에

11) 박소현,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13, pp.220-221.

의해 지적되어 왔다. 길어야 1분, 짧게는 20초에 이르는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는 행위자가 없을 정도이다. 이혼할 것인가, 가서 상담을 받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짧은 순간 행위자들은 법원이 우리 부부의 사정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판사의 보호처분 판결시 상담위탁 기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행위자들의 반감을 사는 중요한 요인이다. 상담소에 가서 한번만 상담을 받으면 끝나는 줄 알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행위자들이 대부분이다. 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 기관에 상담내용과 과정을 소개하는 안내지 한 장씩만 받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해당 상담소로 상담위탁을 받는 행위자에게 전달하며 잘 읽고 가라고 한 마디만 해주면 된다. 그것이 2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원에서 행위자의 입장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가운데 사문화되고 있는 처분이 감호위탁처분이다.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상습성이 강한 행위자들에게는 특정한 보호시설에서 구금하는 엄격한 처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4년 4월까지 가정보호 사건으로 접수돼 ‘감호위탁’(보호처분 6호)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단 두 건에 불과하다.

법원의 가사조사관 역시 부족하다. 2015년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가정법원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일본 도쿄가정재판소에는 117명이 배치되어 있다.

보호처분을 실질적으로 집행·관리할 재정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점도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법무부의 보호관찰 관련 예산은 2013년 84억 7500만원에서 2014년 88억 5600만원으로 약간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2억 원 가까이 감소한 86억 8300만원에 그쳤다. 2018년 현재 가정폭력 행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수강명령 40시간을 보호처분의 하나로 받아 참석하여야 한다. 하루에 8시간, 5일을 받으면 40시간이 된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예산부족으로 수강명령의 경우 20년 이상 강사의 강사료가 8시간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민간기관에서 상담이나 강의를 할 경우 전문가에게 최소 시간당 10만원이 관행인데 비해 시간당 2만 5천원의 강사료는 현실을 도외시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강의비용으로 수강명령을 진행하려는 전문강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40시간 수강명령을 받게 되면 강의와 상담 역량이 미흡한

강사들의 일방적 강의를 지루하게 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행위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반성과 각성은 고사하고 신고한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부추기고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낮은 예산은 낮은 질의 강사의 유입을 가져오고, 이는 낮은 수준의 강의와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줄이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상담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가정폭력을 행사하여도 대충 상담을 받거나 상담을 이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위탁에 따른 상담조치를 어길 경우 강한 처벌을 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의 습관과 태도는 오랜 세월 형성되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의 상담시간과 기간을 늘려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가정폭력 상담의 성과와 과제

가정폭력상담의 목적은 가정폭력특별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해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마음의 살을 돋게 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여성 쉼터가 존재한다.

지난 20년간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여성 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성행교정과 상처치유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이 얼마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적고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현재 양적으로 우리나라 가정폭력 상담의 효과를 일반화하여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폭력 상담기관으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을 통해 상담의 효과와 향후 지향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가정폭력특별법이 생긴 이후 가장 먼저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 중 하나이고, 현재까지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한국의 가정폭력 상담의 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 체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큰 축, 즉 ① 상담 ② 교육(교육강좌), ③ 캠프(부부캠프)를 중심으로 6단계(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음주문제상담 - 집단상담 - 교육강좌 - 부부캠프 - 최종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 상담 역시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① 상담에 집단상담의 변형된 형식을 띄고 있는 자조모임과 자조모임이 확대된 캠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시행된 이후 이전 부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부모에 대한 상담체제도 마련하여 행위자 상담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담체계, 상담자, 상담기관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상담체계, 상담자, 상담기관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행위자 상담의 효과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담체계의 전문성

비체계적인 구조에서는 아무리 상담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상담기관의 의지가 강하다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허술한 집에서 비바람을 막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 설계를 잘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완을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의 6단계 체계는 이러한 설계와 경험적 결과를 근거로 한 검증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전문적인 상담체계이다.

6단계의 시작과 끝은 개별가족 단위에 대한 상담이며 중간과정은 집단 단위의 상담과 교육이다. 즉, 개별 가족의 폭력문제의 특수성을 진단한 후 집단상담과 교육을 통해 이를 교정하고 개별 가족의 특수한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지속할 방법을 제시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개인으로 시작하여 개인이 모인 집단에서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구조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구조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기본적인 개인, 공동, 개인의 구조를 기반으로 이를 구성하는 단위 프로그램들이 탄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문제 상담과 교육 강좌는 특히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단위 프로그램이다. 집단상담에서 행위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정폭력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주로 인한 폭력 발생이다. 따라서 음주문제의 해결 없이 집단상담만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은 절반의 성공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음주상담을 특화하여 구조화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필수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내실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적인 왜곡과 관계에 대한 기술 부족은 단지 집단상담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한 원리 안내와 실천방법 제시가 보완될 때 바람직한 해결이 가능하다. 등지교실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 강좌는 이런 면에서 집단상담의 취약점을 든든하게 보완하는 프로그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 성행교정의 핵심 프로그램인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양 날개에 해당하는 음주상담과 교육강좌를 배치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체계라 할 수 있다.

(2) 상담자의 전문성

상담은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의 전문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인격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이 상담이므로, 어떠한 인격과 상담능력을 갖춘 사람이 상담하느냐에 따라 상담은 전혀 다른 양상과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집단상담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년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교수, 현장 상담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고, 각 프로그램에 최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상담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전문성을 담보해 왔다. 특히 특수분야라 할 수 있는 가정폭력상담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집단을 인력 풀로 구성함으로써 처음부터 비전문가가 상담할 여지를 없앴다.

또한 교육강좌에도 해당 영역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좌를 구성함으로써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종교계, 일반 대중까지 강좌에 참여하는 인기 관계 전문강좌로 자리하기에 이르렀다.

(3) 상담기관의 전문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가정폭력 문제를 상시로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을 제안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실제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후 상담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누적된 자료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상담의 틀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정폭력 상담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전 법률 중심 상담 보완의 틀이 법률과 상담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틀로 완성도를 높인 것이다. 이는 상담소의 오랜 전문성과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가 가정폭력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가정폭력 상담의 효과

상담체계가 전문화 되어 있고, 상담자의 전문성이 높고, 전문적 역량을 오랫동안 축적해온 상담기관의 전문성과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변함없이 강하게 유지해온 것의 결실은 행위자의 상담에 대한 높은 만족과 가정폭력 근절의 효과로 나타났다. 행위자들은 집단상담에서 처음 참가할 때는 ‘이런 상담을 받아서 무슨 도움이 되는가?’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 저항이 심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상담회기가 지날수록 음주상담, 교육강좌를 동반한 집단상담에 만족도가

높아지고 저항과 반발이 사라진다. 행위자들이 가장 많이 집단상담을 묘사하는 표현은 ‘인생학교’라는 것이다. 살면서 놓치기 쉬웠던 부부관계의 원리, 부모자녀관계의 이치를 상담소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고, 이를 실천한 결과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가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20년간 집단상담 진행자로 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행위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행위자는 ‘모세’라는 집단에서 별칭을 가진 행위자였다. 모세는 법정 보호처분기간을 모두 마친 후에도 인생학교에 자발적으로 2년간 참석하였다. 마지막 참석한 날 모든 집단상담 참가 행위자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와 길을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이 아내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을 나무라고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남편인데, 그런 남편인 우리가 도리어 아내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쓰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모든 행위자가 숙연해졌다. 모세는 ‘저는 여기서 느끼고 배우는 것이 너무 좋고 많아 계속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과 태도가 마음에 배이게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행위자는 저녁마다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김밥을 보고 ‘제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지만 거기 못지않은 좋은 상담을 무료로 해주면서 김밥까지 배려해주는 것을 보고 감동 받아 1년 치 김밥을 후원하고 싶습니다.’라며 200만원을 상담소에 1년 김밥비용으로 기부하였다. 최근에는 5년째 행위자 상담에 시간이 날 때마다 참여하는 행위자가 있다. 지나고 나면 여기 상담이 얼마나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된다면 집단상담은 물론 교육강좌와 부부캠프에 신청하여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부모 집단상담에 참여한 학대부모들도 별도의 자조모임을 만들어 서로 부모로서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행위자 상담을 통해 자신의 폭력적으로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해결하려던 성향과 태도를 자각하게 되고 이를 변화시킬 원리와 구체적 방법을 알게 된 후 이를 직접 피해자와 함께 확인하고 다짐하는 기회가 부부캠프이다. 피해자 입장에서조차 상처치유와 현실적 대응방법에 대한 집단상담 이후 행위자와 함께 하는 부부캠프와 피해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캠프를 통해 부부간 관계 재정립, 피해자의 내적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관계의 변화 및 폭력성행 교정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비체계성

이 아닌 체계성, 단순성이 아닌 종합성을 내적 구조로 가진 상담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는 데 있다. 향후 이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만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급 모델로서 소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3)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의 과제

(1) 상담자 역량 강화

행동은 결과이고 태도는 원인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결과인 행동에 대한 개입인데 비해 원인인 태도에 대한 개입이 상담이다. 태도는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마음의 습관이므로 단기간에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통상 6개월(60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상담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더구나 한 상담자와 단일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상담자 및 강사와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부캠프, 알코올상담, 집단교육의 여러 과정을 거치며 변화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삶과 배우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된다.

상담의 성과는 폭력의 감소 및 재발 방지라는 일관된 목적의 달성여부로 결정된다. 상담이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마음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이란 점에서 상담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담자의 전문적 역량과 상담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하는 상담소의 시스템의 체계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다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자들의 전문적 역량이 과거 20년간 얼마나 갖추어졌는가와 이러한 전문성을 펼치는 상담소의 시스템이 얼마나 표준화되고 체계화되었는가라는 두 질문으로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자의 역량은 증진되고 상담소의 시스템은 정교해질 것이므로 가정폭력도 점점 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년간 전국 상담소에 종사하는 상담자들의 역량은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많은 상담역량 증진을 위한 정부의 보수교육과 개인적으로 습득하는 상담기법 및 상담경험을 통해 상담자들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하고 어떤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다. 그 결과는 가정폭력의 감소와 재발 방지로 귀결된다.

문제는 이것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상담자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의 표준화나 매뉴얼화는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의 표준화와 상담매뉴얼의 개발은 상담자의 집단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이다. 상담의 표준화와 매뉴얼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과 매뉴얼 개발이다. 교육은 큰 틀에서 볼 때 정부 기관의 산하 기관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예컨대 올해는 A 상담이론과 기법, 내년에는 B 상담이론과 기법과 같이 제공된다. 상담자의 역량이 장기적인 훈련을 통해 서서히 향상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비교적 단기적인 계획은 보다 장기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을 한 주기로 삼아 한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역량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처음부터 전문상담자로 상담자 풀을 구성하고, 이후 지속적인 상담경험을 제공하고 보완을 거쳐 상담자의 역량을 증진하도록 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모델은 향후 지향해야 할 상담자 전문성 역량 증진 방법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2) 엄한 처벌과 상담치료의 병행

폭력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관용과 엄정한 법집행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가정폭력 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자칫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도 정도와 상습성에 따라 심한 경우와 약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심한 가정폭력을 주로 대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가정폭력 행위자가 사람 같이 보이지 않고 엄정한 법집행만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약한 가정폭력을 주로 대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가정폭력 행위자가 상담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두 유형의 가정폭력 행위자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법집행과 상

담치료라는 두 트랙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의 양상을 보면 배우자 살해에 이르는 정도의 심각한 폭력은 아직 여전하고 신체적 폭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정서, 경제, 통제 같은 가정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심각한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에 대해서는 상담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분노와 음주는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양대 축이라 할 만큼 상담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자신이 폭력을 하게 된 원인으로 드는 자기 진단인 동시에 강하게 해결을 원하는 문제이다. 욕하는 마음에 한 순간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모든 게 술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상담자가 가장 많이 듣는 행위자의 이야기이다. 많은 행위자들은 부부와의 갈등상황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와 분노에 대한 통제능력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성보다 감정 위주의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분노와 가정폭력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음주에 허용적인 문화와 세계 2위의 알코올 소비국인 우리나라에서 음주와 가정폭력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편 분노와 음주는 분리된 문제로 나타나기보다 상호 결합되어 폭력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술 한 잔 마시고 욕하는 마음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따라서 분노와 음주 두 가지를 결합한 분노와 음주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분노와 음주의 공통점은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인 동시에 다른 문제와 연결고리가 복합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분노문제와 음주문제를 가진 행위자 대다수가 다른 문제를 한 두 개씩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노를 일으키는 근본 관계의 문제, 음주를 발생하게 하는 근저에 있는 문제의 연결고리를 동시에 상담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움직임의 하나는 감정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음주는 분노를 표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분노로 대표되는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 감정을 이해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근원을 제거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2018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새로운 교육강좌로 감정관리 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분노를 포함한 가정폭력과 관련한 중요한 감정을 선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원리와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이다. 이는 향후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상담에 도입하여야 할 감정관리, 특히 분노 관리의 선도적 실천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감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

II. 나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가족이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 가운데는 가족이 국가를 대신한다는 의미로 가국주의 국가라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가족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가족이 행복하면 사회와 국가도 행복하다. 가족이 불행하면 사회와 국가도 불행하다. 가족이 불행해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가정폭력이다. 폭력가정에 행복이 깃들기 어렵다.

오랫동안 가정폭력은 개인사이자 가족사로 사회와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 결과 남편에게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일들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운동을 불러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 1997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개입을 명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가정은 1998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날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별법이 절실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법 자체에도 보완해야 할 조항이 많았고, 이 법을 당장 시행할만한 국가적 인프라와 민간의 준비도 부족하였다. 이런 가운데 서구 사회의 입법 사례와 현장 실천 경험을 참

고하면서 지난 20년간 법을 가다듬고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사법부, 민간이 연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20년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눈앞에 두게 되었다. 가장 큰 성과는 가정폭력률의 감소다. 세 집 건너 한 집에서 일어나던 부부간 신체적 폭력은 이제 서른 집 건너 한 집으로 감소하였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이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졌다. 가정폭력률은 감소하고 신고율은 증가한 현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를 국가와 민간에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다. 앞에서 정부, 사법부, 상담현장의 세 차원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하였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정이다. 정부와 사법부와 민간은 서로의 지난 20년간의 노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잘못을 지적하고 빨리 시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자기의 속도로 최선을 다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왔음을 인정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보완할 점을 호의로 전달할 때 더 빠른 개선과 보완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이 자리도 그러한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두 번째는 내실이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의 마련과 실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장 가시적으로 정치권과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도 많았다. 이제 이러한 외양적 성장, 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서 내실을 기해야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가정폭력의 개념이 신체적 폭력에서 통제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적 동향을 반영하여 신체적 폭력 감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고 규정하며 행위자 성행교정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도 보다 많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을 촘촘하고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경찰은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신속한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의 특성을 보다 깊이 고려하여 높은 불기소와 불처분의 비율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담현장에서는 상담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상담소의 시스템을 전문화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정부의 매뉴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스스로 결집하여 현장이 현장의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유연이다. 하나의 칼로 모든 요리를 할 수는 없다. 가정폭력률이 감소하여도 배우자 살해나 심각한 손상을 주는 심한 폭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 행위자에게는 온정이 아닌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관용, 체포우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엄정한 법 적용과 단호한 처벌로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처벌을 모든 행위자로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상담위탁 처분을 받아 오는 많은 행위자들은 신체적 폭력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 경미하고 심리적 폭력의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을 대상으로 강한 제재와 처벌을 가할 경우 일어나게 될 거센 반발과 저항은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강한 처벌보다 장기간의 태도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습적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엄벌로, 심리적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상담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해 보다 단호해졌으며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제 질적인 도약을 할 초입에 서있다. 10년 후에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할 때가 오면 질적인 성장을 어떻게 지속화할 것인가로 고민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 『경찰통계』, 2017
- 국회입법조사처, 『가정폭력 피해자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과제』, 2017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9~2017
- 대법원, 『사법연감』, 1999~2017
- 문유경,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민운영,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 및 범죄화에 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보고서, 2016
- 박소현,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13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검찰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2017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2017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응급의료기관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2017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2018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현황』, 2018
-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2017
- 유해선, 변상해, 『상담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16(4), 2511~2519, 2015
- 조주은,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진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 들어가며

가정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이후 20년간 가정폭력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신고율이 높아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수치로 확인하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이서원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재판절차

먼저 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적절한 보호처분 부과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

한 조사를 명합니다. 보호관찰소에 대하여 결정전 조사명령을 하거나 법원 내의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심리기 일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행위자가 출석하면 보호처분결정을 하고, 일부 전문가 진단이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은 처분 전 진단이나 상담을 실시한 후 보호처분결정을 합니다.

- 2) 통계에 의하면, ① 상담위탁(8호), ②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4호), ③ 보호관찰(5호), ④ 치료위탁(7호), ⑤ 접근행위제한(1호), ⑥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제한(2호)의 순서로 보호처분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3) 심리기일에서 처분을 고지하면 법정 경위가 행위자에게 해당 처분의 절차, 내용과 과정, 처분을 이행할 기관의 위치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하면서 처분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위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기일에 법정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와 함께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 4) 치료위탁처분이나 상담위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조사관에게 필요적으로 집행조사명령을 하여 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 정도와 수탁기관의 보호처분 집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행조사를 통하여 상담위탁처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분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처분, 즉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등의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감호위탁으로의 변경이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현재 적절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지 못하여 감호위탁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불처분결정에 관하여

다음으로 심리 후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통계상 불처분결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수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불처분결정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범죄 사실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불처분결정은 통계수치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먼저, 드문 경우지만 처분 전에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①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가정폭력 사건으로 계속 중인 형사 사건이 있는 경우, ③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미 이혼의 의사가 확고하여 가정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행위자의 보호 처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불처분결정을 하고 검찰로 송치 또는 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은 행위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⑤ 행위자의 소재불명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불처분결정과 검찰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위자가 불출석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실무상 동행영장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어 행위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불처분결정을 하고 검찰로 송치하는 사건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여기에 더하여 행위자가 처분에 앞서 10 내지 20회기의 처분 전 상담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담위탁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불처분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4. 상담의 효과 및 앞으로의 과제

- 1) 실무상 행위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상담위탁처분입니다.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6년 가정보호처리사건 21,802건(불처분, 타법원으로 이송, 기타 포함한 숫자) 중 상담위탁은 4,393건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고, 보호관찰과 상담위탁 병과처분은 455건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국된 11,368건을 놓고 본다면 상담위탁처분은 무려 4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분 전 상담을 마치고 심리기일을 진행하다보면 상담을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 2) 행위자와 피해자가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행위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상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행위자는 대부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형사절차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가정보호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은 부부싸움에 국가가 관여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시하는 행위자를 종종 만납니다. 피해자 역시도 수사기관에서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서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한다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신고율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담 등 교육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가정폭력을 줄이고 상담처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과 더불어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상담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는 등 상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이와 함께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상담처분을 하는 등 정부, 사법기관, 상담현장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함으로써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질의사항

마지막으로 가정보호재판을 하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 1) 첫째,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상담에 협조적이지 않을 우려가 있더라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처분을 합니다. 비협조적인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법

원의 처분으로 억지로 상담소를 찾게 되는 경우에는 상담의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행위자 또는 피해자를 상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나 매뉴얼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에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상담전문가를 만나보고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 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 둘째,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중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른 상담과 자발적 또는 기타 경로로 이루어지는 상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3) 셋째, 가정폭력의 행위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이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개발·보급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부모용과 자녀용 치료 프로그램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4) 마지막으로, 서울가정법원에는 아홉 개의 상담소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상담기관이 없는 구도 많고, 상담기관의 역량상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상담건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상담기관이 부족해서 상담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수탁기관을 지정할 때 상담기관의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살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상담기관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나 노력이 필요한지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6. 마치며

오늘 이 자리가 상담처분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노력들이 가정폭력을 줄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양 혜 원

충신대학교 교수

이서원 소장님께서 발표문을 통하여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오늘의 현실을 가정폭력 실태, 정부, 사법체계, 가정폭력상담으로 구분하여 성과와 과제는 물론 향후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던 제 생각과 고민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을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상담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행위자 교정 상담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폭력상담 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통계자료(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나 실증 연구들이(장희숙, 2012; 박소현, 2013) 행위자 상담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은 내용과 환경에 있어서 일부 한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가정폭력상담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에 있어서 상담 기간과 상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기간은 통상 6개월이고, 상담 시간은 60시간 정도입니다.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 대상자는 더 짧은 기간 동안 10-40시간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과 시간으로,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반드시 52주 이상, 100시간 이상의 상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조현각·장희숙, 2011).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폭력 행위의 교정은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뒤이어서 만성화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므로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의 기간과 시간 확충이 시급합니다.

둘째, 최근 가정폭력상담에서 부부상담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적절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부부상담을 권고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폭력 수준 등 위험요소 등이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되고 있는지 염려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가정폭력상담에서 부부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피해자의 안전 및 상담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¹²⁾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12) Bograd와 Mederos(1999)는 다음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부상담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 개인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M. Bograd & F. Mederos, "Battering and couples therapy: Universal screening and selection of treatment mod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5(3), 291-312.

- ① 양 배우자가 부부상담에 자유 의사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 전제조건임. 특히 아내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아내에게 부부상담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됨.
- ② 남편의 폭력이 경미 혹은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부상담이 가능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
- ③ 남편의 심리적 학대가 경미한 수준이고 자주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아내가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분노상태에 있거나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
- ④ 폭력의 치명성(lethality)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어야 하며 아내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 치명성에 대한 위험요소는 물질남용, 폭력 역사, 폭력범죄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역사, 무기 사용, 위협, 배우자에 대한 강박적 소유욕, 굴기거나 화상 등의 기괴한 폭력 여부 등임.
- ⑤ 남편이 자기의 폭력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함.
- ⑥ 남편이 폭발적 감정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행동화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 계속

에는 폭력 수준, 부부의 정신건강, 기타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부부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상담 유형 중 부부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한 국내연구도 있습니다(변상해, 2011). 그럼에도 가정폭력상담에서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리고 부부상담은 가족체계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고 가족체계이론은 부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 가정폭력상담에서 부부상담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위자 상담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상담 단독의 효과라기보다는 다양한 환경 체계 내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상담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례로 행위자 상담이 이루어지는 사법적 체계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은 주로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가 유예되는 만큼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상 두 처분 간 폭력 수준이나 피해자 상해 정도는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상담 효과성에 있어서는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비해 신체적 폭력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장희숙, 2012). 이에 대해 상담 시간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외에도 기소 여부, 보호관찰의 병행 여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행위자 교정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법적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비해 크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최근 해마다 수백 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은 표준화된 매뉴얼이 개발되고 효과성도 입증되고 있는데 비해 피해자 상담은 전 과정이 민간 기관에 맡겨진 채 상담의 방법, 내용, 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욕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행위자 상담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피해자 특성이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굳이 표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평가와 연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피해자 상담 관련 연구들은 피해자의 우울이나 자아존중감 향상 등 내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중 일부는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변화만으로도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고 가족 전체의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문제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이종원, 2010; 장선, 2010).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의식향상이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상담도 다수 이루어지는 것으로 체감되지만 학계 등에 보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평가 및 연구결과 공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피해자 자조모임을 운영하시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자조모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회원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천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가법에서 자조모임의 성과나 효과적 운영방안 등을 잘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보급해주신다면 실천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가정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치료적 개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 모두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자녀에 대한 개입은 부수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소위 ‘숨겨진 희생자(hidden victims)’로서 자녀폭력을 당한 경우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자녀폭력 부모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상담 현장에서 자녀는 가정폭력 노출로 인한 간접적 피해자일 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직접적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련 전달체계는 가정폭력상담소·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분리되어 있고 지역

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두 분야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두 분야 전문가들의 상호 이해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상담의 전문성 고양을 위해 학계와 실천현장의 긴밀한 공조 노력이 요구됩니다. 발표자께서는 매뉴얼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자 중심의 개발에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전문가가 과정을 주도하고 연구자는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보다는 연구자와 실천전문가가 형식적 차원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자의 전문적 연구 역량이 자문 수준에서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방식의 예로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 시도되기 시작한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를 제안합니다. PAR은 연구자와 당사자(실천전문가)가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계획-실행-성찰-재계획의 연속적·순환적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조용환, 2015). 연구주체와 객체의 분리, 연구와 현장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에서 당사자주의가 강조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담 매뉴얼 개발 뿐 아니라 다양한 가정폭력상담 평가 및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와 실천전문가의 진정성 있는 협력을 이끌어내어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 박소현 (2013). 가정폭력가해자 상담제도와 효과성. *이화젠더법학*, 5(2), 113-157.
- 변상해 (2011).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효과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6(3), 131-146.
- 이종원 (2010).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치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8(4), 103-123.
- 장선 (2010).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기독교적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희숙 (2012).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프로그램의 효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비교. *사회복지연구*, 43(4), 63-90.
- 조용환 (2015).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8(4), 1-49.
- 조현각·장희숙 (2011). 상담을 통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 비교.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지*, 5(1), 217-238.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및 피해자 사후조사.

가정폭력상담소의 활동성과 및 과제

유 향 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사법적으로 처벌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상담을 책임지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 시 일시보호 및 의료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왔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치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여 왔습니다.

본고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서 가정폭력상담의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지난 20년 동안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점검해보고 ‘더 나은 가정폭력상담활동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1. 가정폭력상담소의 활동성과

1) 가정폭력피해자상담·지원사업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상담 및 지원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는 개별·부부·가족상담 및 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 및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수행하는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역시, 처벌로 가야하는 흉악범은 제외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중 상담명령(8호 처분)’을 받은 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가해성행을 교정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2) 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등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변화시켜,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사회 국가적으로 가정폭력은 확실히 예방하고 근절해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왔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들은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가정폭력상담소들은 전국 17개 권역 141개 가정폭력상담소가 회원기관으로 활동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을 활용하여 2015년 부터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각 권역을 중심으로 ‘행복의 시작은 폭력없는 가정’이라는 통일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동시다발적으로 릴레이 가정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들은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을 전국 및 지방매체를 통

해 널리 홍보하고, 관련 책자들도 출판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3)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활동사업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들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들과 연계를 하여 활동하여왔습니다. 본 협의회 대표는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 ·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17개 권역대표 등 임원은 법무부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 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7개 권역대표는 각 권역에서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통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권역의 경우, 서울권역대표는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위원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 사회적 약자 모호 모니터로서 협력하고 있으며, 경기남부권역의 경우, 경기남부권역대표는 경기남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과 경기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분과위원으로서 협력하는 등 전국 각 17개 권역에서 권역네트웍을 형성하여 가정폭력 예방·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이루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상담소는 협의회 차원에서, 경찰청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2014년 업무협약 체결. 유효기간 3년, 3년씩 연장),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시설 내 보호·법률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 앞장섰고, 가정폭력가해자로 몰린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방위임을 탄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협의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지원하는 활동 등도 하였고, 법률구조기관들과 연계하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소송구조 등의 도움도 주었으며, 의료기관들과 연계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료하는 일에도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4) 가정폭력상담원 역량강화 사업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는 3인(소장 1인, 상담원 2인)의 상근직원이 가정폭력상담 및 가정폭력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진행,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진행,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캠페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의 4대약 근절정책 이후 경찰을 통하여 상담소로 연계되는 가정폭력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은 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정신과 소명감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종사자에게, 본 협의회는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여건 속에서도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여 위기 예방 및 가족건강 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일하느라 지친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에게 심신의 피로회복과 재충전의 기회 및 네트워킹을 통한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의 에너지를 제공받아 사기진작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들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상담원 역량강화워크숍을 개최해 왔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종사자 워크숍은 타기관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종사자 워크숍(교육)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즉, 타기관 진행 워크숍에서는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를 비교적 수동적으로 받는 반면에, 본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함께 나누고 지지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가정폭력상담소의 목표에 보다 더 충실히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가정폭력상담소들은 본 협의회에서 주관한 2015년 전국대회(장소: 제주, 참여인원: 160여명) 이후, 종사자들은 한목소리로 매년 이러한 모임의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후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졌다는 피드백을 하여, 협의회차원에서 이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본 사업을 장기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2017년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아 더욱더 내실 있고 풍성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종사자역량강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 가정폭력상담소의 발전 과제

전국적으로 분포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가정폭력상담소들은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으며,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수하며,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를 열심을 다해 감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가정폭력상담소들이 봉착한 현안들은 가정폭력상담소가 본연의 업무를 감당해 내기에는 자체적인 역량 및 소명의식 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기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정책적인 개선 및 지원’이 절실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소의 발전과제로 정리 하고자 합니다.

1)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관련업무는 고도로 전문성을 지닌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지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전문분야입니다. 종사자들의 전문성은 가정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갖는 자긍심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상담소의 현황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보수로 인하여 전문인력들이 소명의식으로 견디며 업무에 매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가정폭력상담소 입장에서는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종사자처우개선책을 관철해 내야하는 것을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첫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둘째, 사회복지종사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
- 셋째, 단일 임금체제 도입 등을 실현할 것
- 넷째,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을 일반예산으로 지정할 것.

2) 가정폭력상담소의 종사자를 증원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이 감당해내고 있는 업무는 지금 현재 상담소장 포함 3인의 인력으로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막중하고 과다한 업무들입니다. 가정폭력관련 상담과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연계활동 등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업무들을 완벽하게 해 내기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를 증원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2018년의 예를 들자면 주무관서인 여성가족부가 10개의 통합상담소를 신규국비지원상담소로 선정하면서 종사자규모면에서는 좀 더 상향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상담소 입장에서는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경우, 가정폭력상담소의 특수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합으로 유도하는 것 보다는 가정폭력상담소의 기능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 더 확실한 지원(상담원 1인 이상 증원 및 운영비 등 지원예산 증액)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 증원이 필요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원 현장 동행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열악한 인력구조(소장 포함 3인의 상담원)상에서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협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

다음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 현장의 요구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공적체계로 포섭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지역 가정폭력상담소들이 이와 같이 촘촘하고 섬세한 피해자지원에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 인력증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가정폭력피해자상담 및 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다 만나면서 ‘가정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담을 해 나가는 특수한 상담의 장입니다. 가정폭력상담은 관계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고 폭력에 대한 민감성도 지닌 상담자가 진행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상담의 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폭력관련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상담소가 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해나가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을 인정해야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해 나가야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의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 가정폭력상담소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가해자를 교정·치료하는 것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해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상담위탁’ 등의 처분(8호 처분)을 통하여,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한다는 것은,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비추어볼 때 가장 의미 있고 심혈을 기울여야할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추세가,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전담할 타 신설기관을 만든다는 의견 및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지원금이 삭감된다는 소식 등이 있어, 가정폭력상담소들이 겪는 심리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들이 하고 있는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전문성·효과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할 것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수년간 미지원시설로 활동해 온 가정폭력상담소들에 대해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 중에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를 신고하고 지금까지 활동해 온 상담소 들이 아직까지도 미지원시설로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활동의 중요성 및 기여도를 인지해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 온 미지원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관한 ‘제107차 양성평

등정책포럼: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법적 체계 개선방안 모색'에서 보고된 가정폭력피해자 조사결과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시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이 시기에,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곳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꼽았고, 각 지역 수사기관 등에서도 '근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피해자지원 부분에서, 지난 20년간의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상담소들이 열악한 조건 중에서도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음에 대한 훌륭한 평가라고 생각되었고, 이러한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 개소 수를 더욱 늘리는 정책을 펴야하고, 그 중에 오랜 기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상담기관으로 함께 활동하여 온 미지원 시설을 우선하여 국비지원을 함으로써 더욱더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을 확실히 해줄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5) 공통메뉴얼 관련 -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상담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가정폭력상담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20년이 된 이 시점에도 공통메뉴얼 등을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공통메뉴얼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3. 결어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동시에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아주 위험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그 국가의 앞

날을 책임져야 할 국민을 키워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20년 동안 우리 모두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인재를 육성해낼 수 있도록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만 두지 않았고, 개인 사회 국가적인 힘을 모아 이를 개선해 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왔습니다. 가정폭력관련특별법 시행 후 지금까지의 20년과 같이 가정폭력 상담소는 앞으로도 계속 가정폭력상담의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내·외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발전을 거듭할 것을 다짐합니다.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조 성 균

여성가족부 권익보호 과장

| 조사연구 결과 |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연구 결과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목 차 >

제 1 장 서 론	7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1
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73
제 1 절 연구대상	73
제 2 절 연구방법	74
제 3 장 연구결과	75
제 1 절 2017년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분석	75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5
2. 행위자의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에 따른 분석	83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87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90
5. 가정폭력상담의 단기 효과성 분석	93
제 2 절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연구 결과	96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6
2. 상담종결 후 경과시간	98
3. 폭력재발 여부	99
4. 관계회복 여부	104
5.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 개선 여부	107
6. 현재 갈등요인	109
7.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제안	111
제 4 장 결론 및 제언	11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의 영역으로 미루어두었던 가정폭력에 대해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등 입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 목적조항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 하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포함한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위탁처분을 받은 행위자에 대하여 폭력성행 교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내지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그동안 서울가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의 가정보호 수탁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되어 2017년 12월 현재까지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및 검찰청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1,640명의 행위자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성행과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본소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 폭력재발방지 및 관계회복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상담종결 이후 6

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자의 폭력재발 여부를 포함한 행동적인 측면의 변화,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에서의 관계적 변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담의 효과성을 이미 살펴본바 있으며, 이는 상담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미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상담의 효과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과 동시에 가정폭력 관련 상담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 및 가정폭력 상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6개월(상담위탁 보호처분) 또는 10~40시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상담을 받고 2017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2008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상담을 종결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자의 폭력재발 여부 및 관계적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상담의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통해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 상담요인, 그리고 상담을 통한 관계 변화 등 가정폭력상담의 단기 효과성을 살펴본다.

둘째, 2008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상담을 종결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자의 폭력재발 여부 및 피해자와의 관계 변화 등 가정폭력상담의 장기 효과성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2017년 본 상담소에서 6개월(상담위탁 보호처분) 또는 10~40시간(상담조 건부 기소유예) 상담을 받고 상담이 종료된 행위자 171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별 분석에서는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 상담요인, 그리고 상담을 통한 관계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2008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의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6개월간 상담에 참여하고 상담을 종결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행위자와 피해자 부부 117쌍¹³⁾이 조사분석 대상이 되었다.

두 번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① 부부간 폭력으로 상담위탁된 경우에 한정하였다. ② 상담 종결 이후 경과 시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6개월 이상으로 follow-up 연구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③ 1회 상담으로 종결된 경우 또는 상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경우에는 상담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④ 상담종결 시점에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행위자가 피해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한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망이나 이혼, 별거 등으로 실질적 부부 관계가 해소된 경우 폭력의 재발유무나 관계적 측면에서의 역동성을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시점에 별거 또는 이혼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포함시켰다. ⑤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본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개별상담, 교육강좌, 음주상담, 집단상담, 부부캠프, 피해자 자조모임 등)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였다. 행위자만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기

13)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 115명(98.3%), 여성 2명(1.7%)이었다.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 역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2017년 본 상담소에서 6개월(상담위탁 보호처분) 또는 10-40시간(상담조 건부 기소유예) 상담을 받고 상담이 종료된 행위자 117명에 대하여 각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문 및 검찰로부터의 상담위탁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둘째, 2008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에 참여하고 상담을 종결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화조사로 진행한 이유는 대상자가 지방에 거주하거나 생업상의 이유로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기간은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3주간 이루어졌으며, 부부 117쌍의 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정폭력 상담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행위자의 행동적 측면에서의 폭력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언어폭력(3문항), 경미한 신체폭력(3문항), 심한 신체폭력(4문항)의 내용으로 구성된 Conflict Tactics Scale(Straus, 1975)을 사용하였다. ②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조사를 병행하였다.

제 3 장 연구결과

제 1 절 2017년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분석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남녀별

행위자 171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37명(80.1%), 여성이 34명(19.9%)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24명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 표 3-1-1. 성별 분석 〉

구 분 성 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 성	137	80.1	46	26.9
여 성	34	19.9	125	73.1
합 계	171	100	171	100

(2)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32.8%(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5.1%), 30대(22.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40대가 32.2%(5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26.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1-2. 연령별 분석 〉

구 분 연 령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미만	-	-	1	0.6
10 대	2	1.2	6	3.5
20 대	12	7.0	21	12.3
30 대	38	22.2	45	26.3
40 대	56	32.8	55	32.2
50 대	43	25.1	31	18.1
60대 이상	20	11.7	12	7.0
합 계	171	100	171	100

(3)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36.8%(6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6.3%(62명)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이 39.8%(68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5.1%(60명)로 나타났다.

〈 표 3-1-3. 교육정도별 분석 〉

구 분 교육정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11	6.4	18	10.5
중 졸	22	12.9	13	7.6
고 졸	63	36.8	60	35.1
전문대졸	7	4.1	6	3.5
대 졸	62	36.3	68	39.8
대학원이상	6	3.5	6	3.5
합 계	171	100	171	100

(4)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7.4%(4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와 자영업이 각 19.9%(각 34명)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2.8%(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18.7%(32명)을 차지하였다.

〈 표 3-1-4. 직업별 분석 〉

구 분 직 업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 부	18	10.5	56	32.8
회사원	47	27.4	32	18.7
단순노무	34	19.9	18	10.5
자영업	34	19.9	22	12.9
전문직	9	5.3	17	9.9
기술직	7	4.1	4	2.3
운전	2	1.2	1	0.6
무직	19	11.1	12	7.0
학생	1	0.6	9	5.3
합 계	171	100	171	100

(5)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4.6%(4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2.8%(39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6.2%(79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5. 경제상태별 분석 〉

구 분 월 수 입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9	5.3	12	7.0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2	24.6	39	22.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6	15.2	14	8.2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9	22.8	19	11.1
500만원 이상	17	9.9	8	4.7
일정한 수입이 없음	38	22.2	79	46.2
합 계	171	100	171	100

(6)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법률혼 부부와 사실혼 부부를 포함하여 부부관계인 경우가 132명으로 77.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관계인 경우가 16.4%(28명)로 나타났다. <표 3-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 표 3-1-6.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분석 >

구 분 관 계		수 (명)	백분율(%)
부부관계	법률혼 부부	119	69.6
	사실혼 부부	13	7.6
	이혼 부부	4	2.3
부모-자녀 관계		28	16.4
기타 가족관계	남매 관계	5	2.9
	형제 관계	1	0.6
	자매 관계	1	0.6
합 계		171	100

(7) 혼인형태별¹⁴⁾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9.6%(105명)로 가장 많았다.

< 표 3-1-7. 혼인형태별 분석 >

구 분 혼 인 형 태	수(명)	백분율(%)
(남)초혼-(여)초혼	105	79.6
(남)재혼-(여)초혼	6	4.5
(남)초혼-(여)재혼	9	6.8
(남)재혼-(여)재혼	12	9.1
합 계	132	100

14) 혼인형태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132명)에 국한하였다.

(8) 동거기간별¹⁵⁾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5.8%(34명)로 가장 많았다. 동거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시기는 자녀양육이 주관심사가 되는 시기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점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대화 또는 취미생활 공유를 통해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표 3-1-8. 동거기간별 분석 〉

구 분 동 거 기 간	수(명)	백분율(%)
1년 미만	2	1.5
1년 이상 ~ 5년 미만	27	20.4
5년 이상 ~ 10년 미만	33	2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34	25.8
20년 이상 ~ 30년 미만	16	12.1
30년 이상	20	15.2
합 계	132	100

15) 동거기간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132명)에 국한하였다.

2. 행위자의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에 따른 분석

(1)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5.6%(95명)로 가장 많아 가정 폭력 중에서 부부폭력, 특히 아내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¹⁶⁾이 18.8%(32명)로 나타났다.

〈 표 3-1-9. 폭력유형별 분석 〉

구 분		수(명)	백분율(%)
폭력유형			
부부관계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95	55.5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18	10.5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	9	5.3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	4	2.3
	아내 및 자녀 폭력	9	5.3
부모-자녀 관계	자녀 폭력	23	13.4
	부모 폭력	5	2.9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에 대한 부모의 맞대응	1	0.6
기타관계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	2	1.2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	2	1.2
	언니에 의한 동생폭력	1	0.6
	형에 의한 동생폭력	1	0.6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에 대한 동생의 맞대응	1	0.6
합 계		171	100

16)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수반된 경우(9명, 5.3%)도 포함되었다.

(2)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8.2%(168명)로 가장 많았다.

〈 표 3-1-10. 폭력행위의 수준에 따른 분석 〉

구 분 폭 력 수 준	수(명)	백분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168	98.2
1주 이상 ~ 5주 미만	3	1.8
합 계	171	100

(3)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를 살펴보면, 그 죄명이 ‘폭행’인 경우가 70% (120명)로 가장 많았다.

〈 표 3-1-10.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

사건명 \ 구 분	수(건)	백분율(%)
폭행	120	70.0
상해	9	5.3
폭행, 재물손괴	8	4.6
특수폭행	6	3.5
폭행, 특수협박	5	2.9
특수상해	3	1.8
특수협박	3	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3	1.8
존속폭행	3	1.8
재물손괴	2	1.2
상해, 폭행	1	0.6
폭행, 협박	1	0.6
협박	1	0.6
존속폭행, 재물손괴	1	0.6
특수재물손괴	1	0.6
특수협박, 재물손괴	1	0.6
특수폭행, 폭행	1	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0.6
유사강간, 특수감금	1	0.6
합 계	171	100

(4) 폭력행위의 정도¹⁷⁾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폭력정도에 따라 밀치는 수준에서 뺨을 때리는 정도까지인 경미한 폭력과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행위자 171명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을 동반하였다. 행위자들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만 폭력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는데,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더욱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기 쉽다.

경미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86%(147명)로,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린 경우가 72.5%(12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흔든 경우가 71.9%(123명)로 나타났다.

심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77.8%(133명)로,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53.8%(9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52.6%(90명)로 나타났다. 칼이나 도끼와 같은 위험한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다치게 한 경우도 15.8%(27명)에 달했다.

17) 행위자의 폭력행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Straus(1979)가 제작하여 사용한 갈등관리행동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 CTS)를 수정 및 보완하여 언어폭력(1문항), 경미한 신체폭력(5문항), 심한 신체폭력(6문항)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 표 3-1-11. 폭력행위 정도에 따른 분석 〉

항 목	폭력동반 유무	
	없음(%)	있음(%)
언어 폭력	–	181(1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181(100)
경미한 폭력	24(14.0)	147(86.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116(67.8)	55(32.2)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121(70.8)	50(29.2)
4.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122(71.3)	49(28.7)
5.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48(28.1)	123(71.9)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47(27.5)	124(72.5)
심한 폭력	38(22.2)	133(77.8)
7.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79(46.2)	92(53.8)
8. 피해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41(82.5)	30(17.5)
9.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81(47.4)	90(52.6)
10. 피해자 목을 졸랐다.	136(79.5)	35(20.5)
11.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144(84.2)	27(15.8)
12.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145(84.8)	26(15.2)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1) 폭력행사 원인

행위자가 가정법원의 상담위탁처분 또는 검찰청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 행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7.5%, 135건), 음주(18.7%, 67건), 부부간 불신(15%, 54건)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가능 항목임). 위 세 가지 원인은 순위의 차이는 있더라도 행위자 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7.5%, 135건)로 나타났다. 나와 배우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배우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폭력적인 대화, 특히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성격이 다르다’는 갈등표현의 이면에는 가부장적 사고에 편향된 남편들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가족구성원들 간에 불평등한 관계를 조성하고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초 순종하고 매사 남편 말에 따르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가정보다는 사회생활이나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시 한다는 불만도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힘)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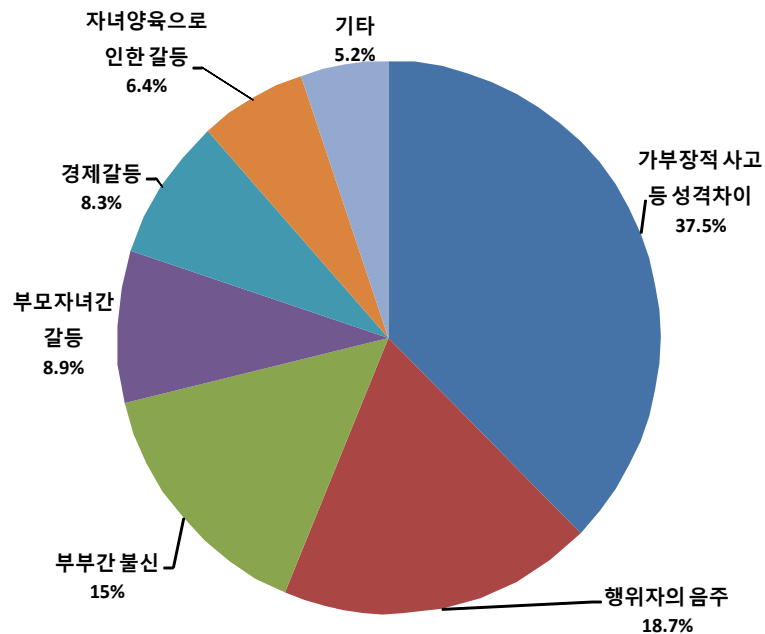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18.7%, 67건)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30.4%(52명)에 해당하였다. 술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행사의 원인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15%, 54건)이다. 남편의 외도,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행사는 8.9%(32건)로 2013년 이래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 표 3-1-12. 폭력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¹⁸⁾ 〉

구 분 폭력행사 원인	수(건)	백분율(%)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135	37.5
행위자의 음주문제	67	18.7
부부간 불신	54	15.0
부모-자녀간 갈등	32	8.9
경제갈등	30	8.3
자녀양육으로 인한 갈등	23	6.4
부부, 부모자녀 외 가족구성원간 갈등 ¹⁹⁾	7	2.0
시아와의 갈등	3	0.8
처가와와의 갈등	3	0.8
국가, 언어 등 문화적 차이	3	0.8
종교갈등	3	0.8
합 계	360	100



[그림 1. 폭력행사 원인]

18)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19) 누나와의 갈등 2명(0.6%), 동생과의 갈등 4명(1.1%), 오빠와의 갈등 1명(0.3%)을 포함하였다.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1) 상담대상자별

상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이 함께 상담한 경우가 89.5%(153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담을 통해 대다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 표 3-1-13. 상담대상자별 분석 〉

구 분 상담대상자	수(명)	백분율(%)
행위자 본인상담	18	10.5
행위자 본인 · 배우자 또는 자녀 상담	153	89.5
합 계	171	100

(2) 상담방법별

2017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과 라오니 캠프를 운영하였다.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행위자의 현재 개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성장배경과 이에 따른 어려움을 사정하며,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시에는 기초조사를 통한 행위자에 대한 정보

공유, 원가족관계 파악, 가정폭력처벌법 및 법적응절차 안내, 상담에 대한 행위자의 기대 확인, MBTI 검사 실시, 부부 및 가족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모색 등을 통하여 폭력의 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행동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상담 또는 부부상담/가족상담을 통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횟수는 상담기간 동안 1주일에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017년도에는 1,884건의 개별상담, 108건의 부부상담, 92건의 가족상담이 실시되었다. 또한 정신과 연계도 2건 진행되었다.

2단계 음주문제 상담은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주문제 상담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행위자 및 피해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알코올문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17년도에 음주문제 상담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위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8회로 137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7회로 31명이 참석하였다.

3단계 집단상담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집단 구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단상담은 집단역동을 통해 자신의 폭력성과 문제행동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집단피드백을 통해 상호지지 및 대인관계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2017년도에는 행위자 및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뿐만 아니라, 자녀폭력 행위자(부모) 집단상담을 별도로 상시 운영하였다. 행위자 집단상담은 매주 목요일 총 43회 실시되었으며, 총 214명이 참석하였다. 부부 집단상담은 총 43회 실시되었으며, 총 154명이 참석하였다. 자녀폭력 행위자 부모 대상 집단상담은 총 37회 실시되어 총 90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자녀대상 미술심리치료집단상담은 총 7회 실시되어 12명의 폭력노출 유아동이 참석하였다.

4단계 교육강좌인 「등지교실」은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강좌이다. ‘등지교실’이라는 이름에는 가정폭력 등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따뜻한 보금자리, 즉 ‘등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 상담소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등지교실」은 행위자 자

신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 가족, 사회,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둘째,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이해하고, 셋째, 바람직한 배우자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7년도에는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제로 총 11회의 동지교실 교육강좌가 실시되었으며 총 441명이 참석하였다.

5단계 부부캠프는 진행되어온 상담을 토대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주말)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에는 3월과 7월에 총 2차례의 캠프를 개최하였으며 행위자 부부 44쌍과 그 자녀 27명 등 총 115명이 참석하였다. 부부캠프를 통하여 부부갈등에 내재된 원인 및 자신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며 분석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6단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은 6개월의 상담위탁기간 동안 일련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폭력인식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종 개별상담은 상담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1회, 1시간 진행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총 332명의 행위자 및 피해자가 최종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은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재 시점에서 겪고 있는 부부갈등문제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공유하며,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7년도에는 10회의 자조모임이 실시되었고 총 96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2017년 12월에는 라오니 모임이 확장된 라오니 캠프를 진행하였다. 라오니 캠프를 통해 참석자들은 뮤지컬 관람 등 문화적 체험,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억압되어 있던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라오니 캠프에는 총 18명의 가정폭력피해 여성이 참석하였다.

2017년에 상담이 종료된 171명 중 82.5%(141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뿐

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은 행위자에게 단계에 따라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행위의 교정과 부부관계 회복에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표 3-1-14. 상담방법별 분석 〉

구 분 상 담 방 법	수(명)	백분율(%)
개별상담	30	17.5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18	10.5
개별상담 · 집단상담	5	2.9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 집단상담	118	69.1
합 계	171	100

5. 가정폭력상담의 단기 효과성 분석 :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2017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117명의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상담의 단기 효과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부관계 회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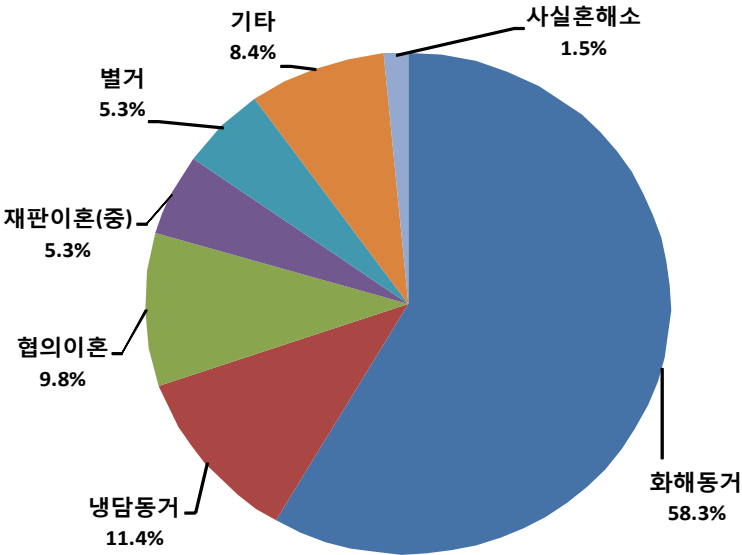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132명의 상담종료시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8.3%(77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동거를 결정하였더라도 여전히 냉담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는 11.4%(15명)로 나타났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냉담한 관계에서 동거를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종료 후에도 전화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미해결의 상태로 축적되어온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협의이

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한 경우도 15.1%(20명)을 차지하였다. 이혼을 통하여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이혼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점검해보고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이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표 3-1-15. 상담종료시 부부관계 분석 〉

구 분 상담종료 후 부부관계	수(명)	백분율(%)
화해 · 동거	77	58.3
냉담 · 동거	15	11.4
협의이혼	13	9.8
재판이혼(중)	7	5.3
별 거	7	5.3
사실혼 해소	2	1.5
기 타 ²⁰⁾	11	8.4
합 계	132	100



[그림 2. 상담종료시 부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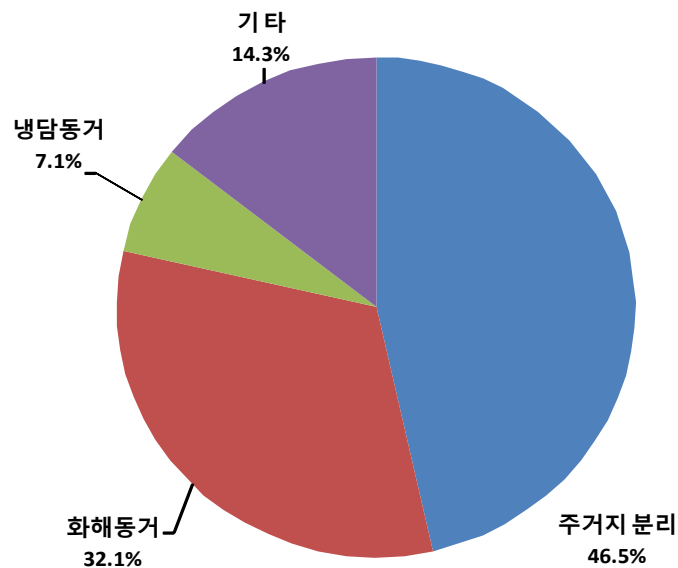
20) 보호처분 변경(7.6%, 10명), 행위자 사망으로 인한 보호처분 취소(0.8%, 1명) 등을 포함하였다.

(2) 부모자녀관계 회복 여부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28명) 상담 종료 이후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거지를 달리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46.5(13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32.1%(9명)로 나타났다.

〈 표 3-1-16. 상담종료시 부모자녀 관계 분석 〉

구 분 상담종료 후 부부관계	수(명)	백분율(%)
주거지 분리	13	46.5
화해 · 동거	9	32.1
냉담 · 동거	2	7.1
기 타 ²¹⁾	4	14.3
합 계	28	100



[그림 2. 상담종료시 부모자녀관계]

21) 보호처분 변경(3.6%, 1명), 보호처분 종료(10.7%, 3명) 등을 포함하였다.

제 2 절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연구 결과²²⁾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08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본소에서 상담에 참여하고 상담을 종결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를 위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신이 금지되어 있는 등 부득이하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사가 완료된 사례는 부부 117쌍이었다.

아래 <표 3-2-1>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38.5%(45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8.5세였다. 피해자의 경우도 40대가 40.1%(47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6.3세였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4.2%(40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도 40.1%(47명)에 달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이 40.2%(47명)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35%(41명)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50.4%(59명)로 가장 많았다. 월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32.5%(38명)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소득은 284만원이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9.5%(58명)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소득은 93만원이었다.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30.8%(36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동거기간은 1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가 완료된 117명은 모두 행위자가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6개월)을 받은 경우이다.

〈 표 3-2-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특 성	구분	행위자	피해자
		빈도(%)	빈도(%)
연 령	20대	2 (1.7)	4 (3.4)
	30대	18 (15.4)	25 (21.4)
	40대	45 (38.5)	47 (40.1)
	50대	40 (34.2)	36 (30.8)
	60대 이상	12 (10.2)	5 (4.3)
교육수준	초졸 이하	7 (6.0)	12 (10.3)
	중졸(중퇴포함)	14 (12.0)	10 (8.5)
	고졸(중퇴포함)	40 (34.2)	47 (40.2)
	전문대졸(중퇴포함)	9 (7.7)	5 (4.3)
	대졸(중퇴포함)	38 (32.4)	41 (35.0)
	대학원졸(중퇴포함)	9 (7.7)	2 (1.7)
직 업	주부	–	59 (50.4)
	회사원	40 (34.2)	19 (16.2)
	단순노무	21 (17.9)	14 (12.0)
	자영업	41 (35.0)	20 (17.1)
	전문직	3 (2.6)	4 (3.4)
	기술직	3 (2.6)	1 (0.9)
	무직	9 (7.7)	–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 (3.4)	3 (2.6)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7 (14.5)	29 (24.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8 (32.5)	16 (13.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6 (22.2)	7 (6.0)
	500만원 이상	23 (19.7)	4 (3.4)
	일정한 수입 없음	9 (7.7)	58 (49.5)
동거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16(13.7)	
	5년 이상 ~ 10년 미만	22(18.8)	
	10년 이상 ~ 20년 미만	36(30.8)	
	20년 이상 ~ 30년 미만	26(22.2)	
	30년 이상	17(14.5)	

2. 상담종결 후 경과시간

조사 대상자의 상담 종결 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가 23.1%(27명)로 가장 많았다. 상담이 종결된 이후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도 32.6%에 달했다. 평균 상담종결 후 경과시간은 29.4개월이었다.

〈 표 3-2-2. 조사대상자의 상담종결 후 경과시간에 따른 분류 〉

구 분	N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7 (23.1)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9 (7.7)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2 (10.3)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20 (17.0)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12 (10.3)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21 (17.9)
48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10 (8.5)
60개월 이상 ~ 72개월 미만	1 (0.9)
72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2 (1.7)
84개월 이상	3 (2.6)
합 계	117 (100)

3. 폭력재발 여부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이행하고 상담을 종결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행위자의 신체폭력 재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위자의 88.9%(104명), 피해자의 69.2%(81명)는 신체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3. 신체폭력 재발 여부 〉

신체폭력 재발 여부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N(%)	N(%)	N(%)
신체폭력	104 (88.9)	13 (11.1)	81 (69.2)	36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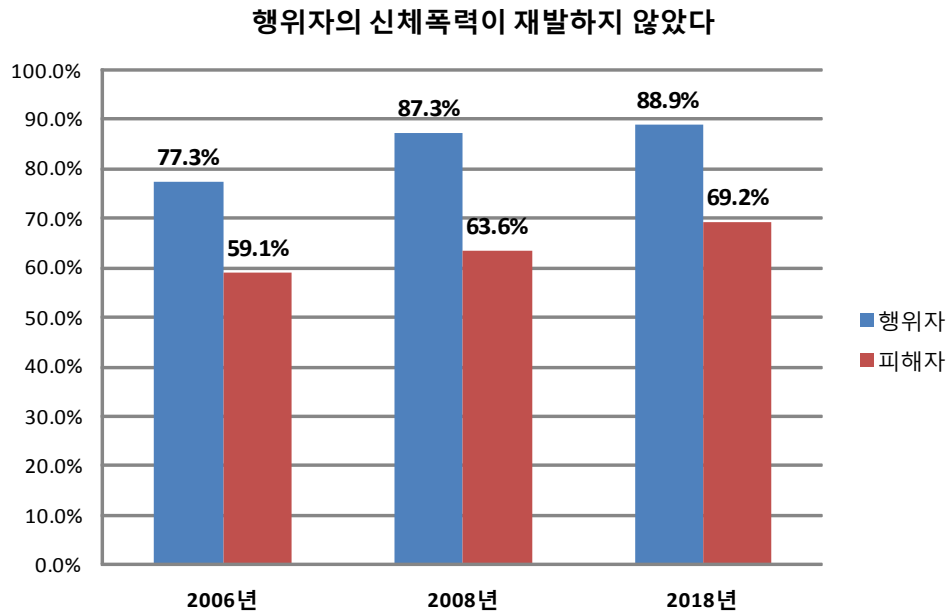
본소에서 2006년²³⁾도와 2008년²⁴⁾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상담효과성 연구와 비교해볼 때, 본 조사에서 행위자와 피해자가 신체폭력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수치는 다소 높았다.

〈 표 3-2-4. 2006년, 2008년, 2018년 조사에서의 신체폭력 재발 여부 비교 〉

신체폭력 재발 여부	2006년		2008년		2018년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재발없음	재발없음	재발없음	재발없음	재발없음	재발없음
	N(%)	N(%)	N(%)	N(%)	N(%)	N(%)
신체폭력	17 (77.3)	13 (59.1)	48 (87.3)	35 (63.6)	104 (88.9)	81 (69.2)

23)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 가정폭력관련 상담법제 개선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p186.

24)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8).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0년 절반의 성공과 남겨진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p172.



[그림 3. 신체폭력 재발 여부 연도별 비교]

무시나 모욕, 욕설 등의 언어폭력 재발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위자의 48.7%(57명), 피해자의 31.6%(37명)은 언어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5. 언어폭력 재발 여부 >

언어폭력 재발 여부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N(%)	N(%)	N(%)
언어폭력	57 (48.7)	60 (51.3)	37 (31.6)	80 (68.4)

한편 신체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행위자 104명, 피해자 81명에게 신체폭력은 중단되었지만 다른 유형의 폭력이 재발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위자의 45.2%(47명), 피해자의 54.3%(44명)는 무시나 모욕, 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6. 신체폭력은 중단되었지만 다른 유형의 폭력이 재발 여부 〉

신체폭력 재발 여부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N(%)	N(%)	N(%)
언어폭력	57 (54.8)	47 (45.2)	38 (45.7)	44 (54.3)

구체적인 폭력행위별로 폭력재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래 주석 13)의 〈표 3-2-7〉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상담참석 이전과 상담종결 이후의 폭력발생률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⁵⁾.

25) 아래의 표에서는 상담참석 이전과 상담종결 이후의 각 항목별 폭력발생률을 비교하였다.

〈 표 3-2-7. 상담참석 이전과 상담종결 이후의 폭력발생률 비교 〉

항 목	상담참석 이전		상담종결 이후	
	행위자 보고 폭력발생률	피해자 보고 폭력발생률	행위자 보고 폭력재발률	피해자 보고 폭력재발률
언어폭력	117(100)	117(100)	60(51.3)	80(68.4)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다.	114(97.4)	117(100)	54(46.2)	76(65.0)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다.	116(99.1)	117(100)	56(47.9)	72(61.5)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111(94.9)	117(100)	48(41.0)	67(57.3)
경미한 폭력	97(82.9)	110(94.0)	13(11.1)	36(30.8)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었다.	75(64.1)	105(89.7)	5(4.3)	30(25.6)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69(59.0)	102(87.2)	9(7.7)	25(21.4)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58(49.6)	98(83.8)	6(5.1)	19(16.2)
심한 폭력	39(33.3)	81(69.2)	8(6.8)	22(18.8)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33(28.2)	73(62.4)	4(3.4)	18(15.4)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리거나 위협했다.	10(8.5)	52(44.4)	4(3.4)	12(10.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8(6.8)	49(41.9)	—	6(5.1)
칼(가위)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	10(8.5)	46(39.3)	2(1.7)	3(2.6)

(1) 폭력재발 방지 요인²⁶⁾

신체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행위자 104명, 피해자 79명에게 폭력이 재발하지 않았다면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물었다. 행위자 및 피해자가 보고한 응답결과는 신체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여한 요인을 개인적 요인, 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가. 행위자 보고

행위자는 공권력의 개입으로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권력의 개입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처벌이 주는 불편함으로 인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33.6%, 45명). 그 다음으로 상담처분을 통해 폭력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25.4%, 34명). 행위자는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26) 중복응답이 가능한 항목임.

〈 표 3-2-8. 행위자 보고 - 폭력재발 방지 요인 〉

구 분	상세 내용	N (%)
개인적 요인	폭력에 대한 확실한 인식	34 (25.4)
	분노조절능력 향상	7 (5.2)
	내 자신에 대한 객관적 성찰	4 (3.0)
관계적 요인	배우자에 대한 이해력 증진	31 (23.1)
	의사소통 원활	4 (3.0)
	남편, 아빠로서의 역할 및 책임감 인식	5 (3.7)
환경적 요인	공권력의 개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식	45 (33.6)
	별거, 이혼 등으로 아내와의 물리적인 분리	4 (3.0)
합 계		134 (100)

나. 피해자 보고

피해자는 자기 자신과 행위자 모두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54.8%, 62명). 다음으로 행위자가 폭력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23.8%, 27명).

〈 표 3-2-9. 피해자 보고 - 폭력재발 방지 요인 〉

구 분	상세 내용	N (%)
(행위자의) 개인적 요인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확실한 인식	27 (23.8)
	행위자의 분노조절능력 향상	2 (1.8)
	행위자의 단주 또는 절주행동	2 (1.8)
관계적 요인	피해자에 대한 이해력 증진	13 (11.5)
	의사소통 원활	4 (3.6)
환경적 요인	공권력의 개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식	62 (54.8)
	별거, 이혼 등으로 아내와의 물리적인 분리	3 (2.7)
합 계		113 (100)

(2) 폭력재발 요인

언어폭력을 포함한 신체폭력이 재발되었다고 응답한 행위자 60명, 피해자 80명에게 폭력재발 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분노조절 실패로 인해 폭력이 재발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행위자 66.7%, 40명 / 피해자 73.8%, 59명).

〈 표 3-2-10. 행위자 보고 - 폭력재발 요인 〉

구 분	N (%)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분노조절실패	40 (66.7)
음주상태에서	20 (33.3)
합 계	60 (100)

〈 표 3-2-11. 피해자 보고 - 폭력재발 요인 〉

구 분	N (%)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분노조절실패	59 (73.8)
행위자의 음주문제	13 (16.2)
행위자의 습관적인 욕설과 폭언	8 (10.0)
합 계	80 (100)

4. 관계회복 여부

상담이 종결된 이후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물었다. 전혀 개선되지 않은 0점을 기준으로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관계회복 정도를 점수화 하도록 하였다.

(1) 행위자 보고

행위자의 89.7%(105명)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12. 행위자 보고 -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정도 〉

구 분	전혀 회복 되지 않았다										매우 회복 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빈 도	12 (10.3)	10 (8.5)	5 (4.3)	4 (3.4)	1 (0.9)	13 (11.1)	8 (6.8)	20 (17.1)	22 (18.8)	11 (9.4)	11 (9.4)	117 (100)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응답한 105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점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좋아진 점으로 꼽았다(42.9%). 행위자는 상담참석 이전에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피해자를 대했다면, 상담을 통해 자신의 관점과 사고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의 성격이나 생활방식, 가치관이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표 3-2-13. 행위자 보고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좋아진 점 〉

구 분	N (%)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관점의 전환	45 (42.9)
의사소통의 양과 질 개선	26 (24.8)
분노조절 능력의 향상	15 (14.3)
음주문제 개선	11 (10.4)
폭력에 대한 확실한 인식	8 (7.6)
합 계	105 (100)

(2) 피해자 보고

피해자의 79.5%(93명)는 행위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표 3-2-14. 피해자 보고 - 행위자와의 관계회복 정도 〉

구 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매우 회복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빈 도	24 (20.5)	8 (6.8)	4 (3.4)	7 (6.0)	4 (4.5)	13 (11.1)	9 (7.7)	14 (12.0)	24 (20.5)	6 (5.1)	4 (3.4)	117 (100)	

행위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응답한 93명은 행위자가 폭력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게 됨으로써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점을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좋아진 점으로 꼽았다(42.9%). 신체적 폭력의 중단이 부부관계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2-15. 피해자 보고 -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좋아진 점²⁷⁾ 〉

구 분	N (%)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인식으로 신체적 폭력 중단	50 (31.2)
행위자의 무시모욕적인 언어습관의 변화 등 의사소통 개선	36 (22.5)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증가	36 (22.5)
행위자의 분노조절능력의 향상	23 (14.4)
행위자의 음주문제 개선	15 (9.4)
합 계	160 (100)

27) 중복응답이 가능한 항목임.

5.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 개선 여부

상담이 종결된 이후 현재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물었다. 전혀 개선되지 않은 0점을 기준으로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분노조절 능력을 점수화하도록 하였다.

(1) 행위자 보고

행위자의 96.6%(113명)은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행위자가 보고한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 개선에 대한 평균 점수는 7.1점이었다. 이는 이전에 비해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이 7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3-2-16. 행위자 보고 - 분노조절 능력 개선 정도 〉

구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매우 개선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빈도	4 (3.4)	2 (1.7)	2 (1.7)	1 (0.9)	1 (0.9)	13 (11.1)	10 (8.5)	22 (18.8)	28 (23.9)	23 (19.7)	11 (9.4)	117 (100)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113명은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발생하는지 인식하게 되어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자신의 화난 감정을 달래주고, 일단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타임아웃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외부자극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반응이 달라진 점을 꼽았다(60.1%). 즉 상담을 통해 분노조절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분노상황에서 대안 행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표 3-2-17. 행위자 보고 -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된 이유 〉

구 분	N (%)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발생하는지 인식하고 대안 행동 모색	68 (60.1)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어서	38 (33.7)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7 (6.2)
합 계	113 (100)

(2) 피해자 보고

피해자의 88%(103명)가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자가 보고한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 개선에 대한 평균 점수는 5.6점이었다. 이는 상담참여 이전에 비해 상담종결 이후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이 5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3-2-18. 피해자 보고 -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 개선 정도 〉

구 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매우 개선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빈도	14 (12.0)	9 (7.7)	8 (6.8)	1 (0.9)	3 (2.6)	9 (7.7)	11 (9.4)	22 (18.8)	20 (17.1)	12 (10.3)	8 (6.8)	117 (100)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103명은 행위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45.7%).

〈 표 3-2-19. 피해자 보고 -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된 이유 〉

구 분	N (%)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47 (45.7)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발생하는지 인식하고 대안 행동 모색	26 (25.2)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어서	24 (23.3)
분노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음주문제 개선	6 (5.8)
합 계	103 (100)

6. 현재 갈등요인²⁸⁾

상담이 종결된 이후 행위자 자신의 행동변화가 일어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해자와의 갈등요인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1) 행위자 보고

행위자는 현재 피해자와의 갈등요인으로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성격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28%). 피해자의 변하지 않는 성격으로 인한 의견차이, 자신에 대한 무시와 의심의 말이나 행동, 피해자가 가사에 소홀할 경우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힘들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28)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 표 3-2-20. 행위자 보고 - 현재 피해자와의 갈등요인 〉

구 분	N (%)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성격차이	40 (28.0)
특별히 어려운 문제없음	30 (20.9)
경제 갈등	27 (18.9)
자녀와 관련된 문제	17 (11.9)
부부간 신뢰회복	15 (10.5)
음주문제로 인한 갈등	11 (7.7)
원가족과의 갈등	3 (2.1)
합 계	143 (100)

(2) 피해자 보고

피해자는 경제 갈등을 현재 행위자와의 가장 큰 갈등요인으로 꼽았다(27.7%). 행위자가 음주, 도박, 다단계 등에 빠져 가정경제를 등한시하거나(26명), 행위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문제로 인한 갈등(20명)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표 3-2-21. 피해자 보고 - 현재 행위자와의 갈등요인 〉

구 분	N (%)
생활비 미지급 등 경제 갈등	46 (27.7)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45 (27.1)
음주문제로 인한 갈등	22 (13.3)
원가족과의 갈등	15 (9.1)
특별히 어려운 문제없음	14 (8.4)
폭력의 재발	11 (6.6)
자녀와 관련된 문제	7 (4.2)
부부간 신뢰회복	6 (3.6)
합 계	166 (100)

7.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제안²⁹⁾

(1) 행위자의 제안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행위자의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22>와 같다.

< 표 3-2-22.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행위자의 제안 >

구 분	N (%)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	77 (47.2)
피해자 상담 의무화	35 (21.5)
상담처분의 긍정적인 측면 인식 필요	27 (16.6)
상담처분 종결 후 지속적인 follow-up	7 (4.3)
상담소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	5 (3.0)
가정사에 법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5 (3.0)
상담처분 기간의 확대	4 (2.5)
상담처분 기간의 축소	3 (1.9)
합 계	163 (100)

대다수의 행위자는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47.2%). 행위자들이 제시한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집단상담을 확대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별로 관계를 세분화하고,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59.5%, 26명).
- ② 개별상담의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일대일 개별상담을 통하여 좀 더 심층적인 심리적 지원의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24.3%, 18명).
- ③ 자녀상담 병행 등 가족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9.5%, 7명)
- ④ 상담 및 교육시 영상자료와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8.1%, 6명).

29)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 ⑤ 야간 및 주말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생업으로 인해 평일에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4.1%, 3명).
- ⑥ 음주문제 상담을 확대, 단주모임으로 연계하여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주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4.1%, 3명).

이외에도 정신과치료병행, 개별상담과 집단상담만으로 프로그램을 선택과 집중, 부부캠프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행위자는 폭력을 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상담이 병행되어야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21.5%). 또한 상담처분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대로 인식하여 법절차 등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최소화하고 가정폭력 등 가족 내 갈등이 있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16.6%).

(2) 피해자의 제안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피해자의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23>과 같다.

< 표 3-2-23.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피해자의 제안 >

구 분	N (%)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	61 (35.8)
상담처분이 법적 제재라는 확실한 인식 필요	49 (28.9)
상담처분 종결 후 지속적인 follow-up	30 (17.7)
피해자 상담 병행확대	25 (14.7)
가정폭력의 성행교정 및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지원확대	5 (2.9)
합 계	170 (100)

피해자들의 경우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35.8%). 이는 피해자들이 상담 프로그램에서 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교육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자신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별상담의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일대일 개별상담을 통하여 부부관계의 역동 및 원가족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해 좀 더 심층적인 심리적 지원의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30.5%, 18명).
- ② 집단상담을 확대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별로 관계를 세분화, 부부갈등 원인별로 문제를 세분화하고,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또한 집단상담에서 역할극, 사이코드라마 등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15.3%, 9명).
- ③ 부부캠프를 확대운영하면 좋겠다. 부부캠프 참석을 통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10.2%, 6명)
- ④ 음주문제 상담을 보다 전문화하여 행위자가 단주 및 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10.2%, 6명)
- ⑤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을 확대운영하면 좋겠다(8.5%, 5명).

이외에도 심리치료병행, 정신과치료병행, 다양한 주제의 교육강좌 확대운영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상담처분이 법적 제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상담처분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8.9%). 또한 상담처분이 종결된 이후에도 교육연계를 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근황을 물어보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17.7%).

제 4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본소에 상담위탁되어 6개월(상담위탁 보호처분) 또는 10-40시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상담을 받고 2017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171명에 대한 상담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2008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상담을 종결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11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행위자의 폭력재발 여부 및 관계적 변화 등의 조사를 통하여 상담효과성을 살펴보았다.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폭력이 재발하지 않았다(행위자 보고 88.9%, 피해자 보고 67.5%).

둘째, 언어폭력이 재발하지 않았다(행위자 보고 48.7%, 피해자 보고 31.6%).

셋째, 신체폭력은 재발하지 않았지만, 언어폭력은 있었다(행위자 보고 45.2%, 피해자 보고 53.2%).

넷째, 폭력재발 방지 요인으로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공권력의 개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식을 꼽았다(행위자 보고 33.6%, 피해자 보고 54.8%).

다섯째, 언어폭력을 포함한 신체폭력이 재발된 경우 폭력재발 요인으로,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분노조절 실패를 꼽았다(행위자 보고 66.7%, 피해자 보고 73.8%).

여섯째, 행위자의 89.7%(105명), 피해자의 79.5%(93명)는 관계가 회복되었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을 관계회복 요인으로 꼽았고(42.9%),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에 대해 확실히 인식함으로써 신체적 폭력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1.2%).

일곱째,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되었다(행위자 보고 96.6%, 피해자 보고 88%). 행위자는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발생하는지 인식하고 대안의 행동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한 반면(60.1%), 피해자는 행위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참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45.7%).

여덟째, 현재 갈등요인으로 행위자는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성격차이를 꼽았으며(28%), 피해자는 행위자가 가정경제를 등한시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문제로

인한 갈등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27.7%).

아홉째, 행위자와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이 폭력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은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이고, 바로 그 점이 행위자의 폭력재발을 방지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라는 점에 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확산, 정착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운용과정도 이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더욱 강력한 징벌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28.9%).

둘째, 본 조사에서 폭력이 재발된 요인으로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분노조절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행위자 보고 66.7%, 피해자 보고 73.8%), 가정폭력상담에 가부장적인 사고 및 분노조절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보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폭력상담의 효과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시 피해자 상담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위자의 폭력행위 축소보고, 형식적인 상담처분 이행 등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의견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이 종결되더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인 ‘인권보호’와 ‘가정보호’의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폭력재발 방지와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담소에서의 사후관리는 폭력재발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있어서 상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며 행위자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도입에는 법원과 검찰청에서 행위자에게 상담위탁 보호처분 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때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상담 또는 조사연구 등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에 동의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일선 상담소의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이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 가정폭력관련 상담법제 개선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p186.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8).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0년 절반의 성공과 남겨진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p172.

상담효과성 조사 설문지 ① 행위자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 이래 가정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상담소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맞이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의 폭력성행을 교정하는 주요한 기능을 해온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그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5.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1. 상담소에서의 상담 종결 이후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용	상담 전		상담 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다.				
2.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다.				
3.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4.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었다.				
5.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7.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8.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리거나 위협했다.				
9. 목을 졸랐다.				
10. 칼(가위)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				

1-1. 상담소에서의 상담 종결 이후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폭력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 어떤 점이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① 상담을 통한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② 배우자에 대한 이해력 증진, ③ 공권력의 개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식, 등)

1-2. 상담소에서의 상담 종결 이후 배우자에게 언어폭력(1-3번)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상담소에서의 상담 종결 이후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4-10번)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난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상담소에 위탁된 폭력사건 발생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0점이었다면, 현재는 몇 점 정도인지요?

0	1	2	3	4	5	6	7	8	9	10

2-1.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좋아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시. 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관점의 전환, ② 분노조절 능력의 향상, ③ 의사소통 방법의 개선(대화법의 개선 등), ④ (나와 배우자의) 음주문제 개선, 등)

3. 분노조절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상담소에 위탁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노조절 능력이 0점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저
그렇다

매우
개선되었다

3-1. 분노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 ① 배우자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어서, ② 내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어서, ③ 분노조절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등)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자와 잘 풀리지 않은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5. 배우자와 지금? : ① 동거 ② 별거 ③ 이혼 (이혼하신 때: _____년 _____월)

6. 마지막으로 상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하면 좋을까요?(상담소 프로그램, 법 제도 등에 대한 제언)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상담효과성 조사 설문지 ② 피해자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 이래 가정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상담소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맞이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의 폭력성행을 교정하는 주요한 기능을 해온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그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5.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1. 상담소에서의 상담 종결 이후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까?

내 용	상담 전		상담 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다.				
2.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다.				
3.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4.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었다.				
5.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7.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8.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리거나 위협했다.				
9. 목을 졸랐다.				
10. 칼(가위)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				

1-1. 상담소에서의 상담 종결 이후 배우자가 위와 같은 폭력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① 가해자가 상담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② 피해자에 대한 이해력 증진, ③ 가해자가 공권력의 개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식, 등)

1-2. 상담소에서의 상담 종결 이후 배우자가 귀하에게 언어폭력(1-3번)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상담소에서의 상담 종결 이후 배우자가 귀하에게 신체적 폭력(4-10번)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상담소에 위탁된 배우자의 폭력사건 발생시 귀하와의 관계가 0점이었다면, 현재는 몇 점 정도인지요?

0	1	2	3	4	5	6	7	8	9	10

2-1. 배우자가 상담을 받은 결과 가장 좋아진 점은 무엇입니까? (예시. ① 분노조절 능력의 향상, ② 음주문제 개선, ③ 대화법의 개선(욕설, 비난과 공격적인 말투 자제 등), ④ 신체적인 폭력행위 중단, ⑤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증가 등)

3. 배우자가 상담을 받은 후, 폭력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소에 위탁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폭력성이 10점이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폭력성이
완전히
개선
되었다

폭력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4. 배우자의 분노조절 능력은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상담소에 위탁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노조절 능력이 0점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저 그렇다				매우 개선되었다			

4-1. 배우자의 분노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①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어서, ② 가해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어서, ③ 가해자가 분노조절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등)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자와 잘 풀리지 않은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6. 배우자와 지금? : ① 동거 ② 별거 ③ 이혼 (이혼하신 때: _____년 _____월)

7. 마지막으로 상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하면 좋을까요?(상담소 프로그램, 법 제도 등에 대한 제언)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